

머 리 말

정부의 財政運用이 건전한 國民經濟의 成長과 適正한 所得分配의 改善을 촉진하는 것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關心事는 公共財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된다. 특히 90년대의 정부의 재정운용이 國民生活水準의 向上과 福祉增進을 위한 社會開發 支援에 역점을 두고 있어 불가피하게 國民租稅負擔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公共資金의 효율적 운용은 매우 중요한 政策課題로 대두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하겠는데 이 중 정부재정운용에서 그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政府基金制度에 대해서 論議해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基金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여 필요시 豫算 外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豫算會計法에 근거하여 8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왔으나 財政金融政策과의 連繫를 강화하고 공공자금운용의 效率性和 彈力性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主務部處에 의한 방만한 基金運用, 政府豫算會計의 多重構造化, 基金赤字累增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비효율화 등 여러가지 운용상의 問題點을 초래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財政機能을 正常化하고 公共資金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基金制度를 改善하고 기금의 管理主體에 의한 자의적인 운용의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신중하게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意識을 바탕으로 本院에서는 현행 기금제도의 問題點이 무엇이며 90년대 재정운용의 기본과제인 財政機能의 正常化와 公共財源配分の 效率性을 提高하기 위한 具體的인 基金制度 改善方案을 提示하기 위해 本 報告書를 발간

하게 된 것이다.

本 研究를 통해 基金制度가 政府豫算制度가 갖는 硬直性을 탈피하고 經濟社會的 與件變化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政策推進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基金制度 本然의 機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一助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本 研究를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亞洲大의 朴鍾九 教授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1年 3月 日

韓國經濟研究院

院長 崔 鍾 賢

目 次

머리말

| | |
|----------------------------------|----|
| I. 序論 | 1 |
| II. 基金의 現況 및 問題點 | 3 |
| 1. 基金現況 | 3 |
| 가. 基金의 性格 및 種類 | 3 |
| 나. 基金의 造成 | 4 |
| 다. 基金의 運用 | 6 |
| 라. 餘裕資金 運用實態 | 8 |
| 2. 基金制度의 問題點 | 10 |
| 가. 政府豫算會計의 多重構造化 | 11 |
| 나. 政府管理基金과 民間管理基金의 區分基準 模糊 | 12 |
| 다. 類似基金의 重複과 不合理한 基金管理 | 13 |
| 라. 基金運用에 대한 法的 規定 未備 | 14 |
| 마. 餘裕資金運用에 관한 統一的인 基準 未備 | 14 |
| III. 基金과 國民經濟 | 16 |
| 1. 基金과 財政運用 | 16 |
| 가. 基金과 財政收支 | 16 |
| 나. 基金과 財政投融資 | 18 |
| 다. 基金과 國公債發行 | 21 |
| 2. 基金과 金融活動 | 22 |
| 가. 基金과 金融産業 | 22 |

| | |
|---------------------------|----|
| 나. 基金의 機關投資家 役割 | 23 |
| 다. 基金運用과 金融構造 | 25 |
| IV. 外國의 基金制度 概觀 | 26 |
| 1. 美國 | 26 |
| 2. 日本 | 30 |
| 3. 英國 | 36 |
| V. 基金制度의 改善方案 | 38 |
| 1. 基金管理·運用에 대한 法的 規定 強化 | 38 |
| 2. 基本制度의 整備 | 40 |
| 가. 類似基金 統廢合 | 41 |
| 나. 基金廢止 및 政府豫算會計로의 轉換 | 43 |
| 다. 融資機能의 一元化 | 43 |
| 3. 基金運用計劃時 關係部處와의 事前協議 強化 | 45 |
| 4. 餘裕資金 運用에 관한 基準 強化 | 46 |
| 5. 機關投資家 機能의 活性化 | 48 |
| 가. 外國事例 | 49 |
| 나. 問題點 | 50 |
| 다. 改善方案 | 51 |
| VI. 主要 基金의 改善方案 | 55 |
| 1. 國民年金基金 | 55 |
| 가. 概要 | 55 |
| 나. 財源調達과 運用 | 56 |
| 다. 問題點 및 運用改善方案 | 57 |
| 2. 石油事業基金 | 61 |
| 가. 概要 | 61 |
| 나. 基金造成 및 運用 | 62 |

| | |
|-----------------------|----|
| 다. 問題點과 運用改善方案 | 63 |
| 3. 公務員年金基金 | 66 |
| 가. 概要 | 66 |
| 나. 基金造成 및 運用 | 66 |
| 다. 基金運用의 問題點 | 67 |
| 라. 改善方案 | 68 |
| 4. 國民住宅基金 | 70 |
| 가. 概要 | 70 |
| 나. 基金造成 및 運用 | 71 |
| 다. 問題點 및 運用改善方案 | 72 |
| VII. 要約 및 結論 | 75 |
| 參考文獻 | 77 |
| 附 表 | 81 |

表 目 次

| | |
|-------------------------------------|----|
| 〈表 1〉年度別 基金造成規模 | 5 |
| 〈表 2〉年度別 基金運用 現況 | 7 |
| 〈表 3〉企業會計方式 適用基金 收益性 現況(1988) | 7 |
| 〈表 4〉餘裕資金 運用實態 | 9 |
| 〈表 5〉主要基金의 餘裕資金 運用實態(1988) | 10 |
| 〈表 6〉年度別 基金設置 推移 | 10 |
| 〈表 7〉會計別 統合財政收支 現況 | 17 |
| 〈表 8〉年度別 財政收支 補填財源 內譯 | 18 |
| 〈表 9〉政府管理基金의 財政融資現況 | 19 |
| 〈表 10〉財政投融资財源 調達現況 | 20 |
| 〈表 11〉主要基金債券의 發行殘額 內譯 | 21 |
| 〈表 12〉主要 基金債券의 發行條件 및 消化方法 | 22 |
| 〈表 13〉金融商品別 基金 比重(1988) | 23 |
| 〈表 14〉聯邦豫算 財政收支 | 28 |
| 〈表 15〉聯邦信託基金 收入·支出 內譯 | 29 |
| 〈表 16〉聯邦信託基金 規模 | 30 |
| 〈表 17〉財政投融资規模 變化推移 | 31 |
| 〈表 18〉財政投融资財源 現況 | 32 |
| 〈表 19〉資金運用部資金의 國債引受比率 | 32 |
| 〈表 20〉國民年金·厚生年金會計 財政推移 | 33 |
| 〈表 21〉公庫·公團의 財源造成 內譯(1989) | 35 |

| | |
|-------------------------------------|----|
| 〈表 22〉 國家貸付資金의 主要機能 | 37 |
| 〈表 23〉 基金運用計劃 樹立方式 區分 | 46 |
| 〈表 24〉 機關投資家 有價證券 保有比率 | 50 |
| 〈表 25〉 基金別 株式投資制限 內容 | 52 |
| 〈表 26〉 國民年金基金 造成規模 | 56 |
| 〈表 27〉 國民年金基金 運用規模 | 58 |
| 〈表 28〉 石油事業基金 支援實績(1979-89) | 62 |
| 〈表 29〉 石油事業基金 餘裕資金 運用內譯(1989) | 63 |
| 〈表 30〉 公務員年金基金 造成・運用 現況(1988) | 67 |
| 〈表 31〉 國民住宅基金 資金調達實績 | 72 |
| 〈表 32〉 國民住宅基金 資金運用現況 | 72 |

附 表 目 次

| | |
|-------------------------------------|-----|
| 〈附表 1〉政府管理基金 現況 | 83 |
| 〈附表 2〉民間管理基金 現況 | 87 |
| 〈附表 3〉設立目的別 基金 分類 | 90 |
| 〈附表 4〉造成規模別 基金 分類 | 91 |
| 〈附表 5〉政府管理基金 基金造成規模 | 92 |
| 〈附表 6〉民間管理基金 基金造成規模 | 93 |
| 〈附表 7〉政府管理基金 基金運用規模 | 94 |
| 〈附表 8〉民間管理基金 基金運用規模 | 95 |
| 〈附表 9〉政府管理基金 餘裕資金 運用現況(1988) | 96 |
| 〈附表 10〉民間管理基金 餘裕資金 運用現況(1988) | 97 |
| 〈附表 11〉政府管理基金 政府出捐現況 | 98 |
| 〈附表 12〉民間管理基金 政府出捐現況 | 99 |
| 〈附表 13〉基金別 財源造成方法(政府管理基金) | 100 |
| 〈附表 14〉基金別 財源造成方法(民間管理基金) | 101 |

1. 序 論

國內基金은 공공부문의 양적 팽창과 역할 증대에 편승해 급속히 비대해져왔으며 자연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 또한 계속 증가되어 왔다. 88년 현재 국내기금은 政府管理基金과 民間管理基金을 합쳐 무려 60개에 이르고 있으며 基金造成規模만 해도 22兆 13億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금의 對 GNP 比率이 17.8%에 육박하고 있고 기금규모가 一般會計規模를 上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財政運用이 얼마나 跛行的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기금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게 됨에 따라 정부기금제도는 수많은 問題點을 야기하게 되었다. 예컨대 政府豫算會計의 多重構造化, 類似基金의 重複과 不合理한 基金管理, 基金運用에 대한 法的 規定 未備와 그에 따른 資金運用의 恣意性, 基金赤字累增으로 인한 財政運用의 非效率性과 通貨管理의 어려움 등은 현행 기금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누누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방만한 기금운용을 규제하고 기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改善方案의 마련이 시급한 課題로 대두되고 있다.

90년대의 재정운용의 기본과제가 財政機能의 正常化와 公共財源配分의 效率性 提高라고 할 때 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특별한 意義를 가진다. 특히 기금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자의적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基金制度 改善方案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특별한 時宜性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稿는 이러한 인식하에 國內基金制度의 問題點을 검토하고 運用改善方案을 제시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였다.

本稿에서는 기금제도가 기금운용의 彈力性과 自律性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금

의 公共性과 效率性을 조화시켜 정부의 余他 政策과의 連繫를 강화하는 것을 그 基本原則으로 한다는 시각에 입각하여 基金管理·運用에 대한 法的 規定 強化, 基金制度의 整備, 基金運用計劃의 事前協議 強化, 餘裕資金運用에 관한 基準 強化 그리고 機關投資家 機能의 活性化를 우선적인 運用개선방안으로 검토하였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國內기금의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基金과 國民經濟라는 제목하에 기금과 財政運用 그리고 金融活動과의 상관관계에 點을 맞추어 기금의 國民經濟的 役割을 간략히 개관하였다. 4장에서는 美國, 日本, 英國의 재정운용과 기금제도의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5장에서는 基金制度 改善을 위한 여러가지 方案을 검토하였다. 6장에서는 國民年金基金을 비롯한 主要 基金의 改善方案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研究結果의 要約 및 向後 政策方向을 提示하였다.

II. 基金의 現況 및 問題點

1. 基金現況

가. 基金의 性格 및 種類

國內基金은 그간 公共部門의 양적 팽창과 역할 증대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 결과 88년말 현재 基金數 60개, 基金造成規模 22兆 13億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60개의 기금중 過半數가 넘는 기금이 80년대 이후 설립되었고 기금조성규모에 있어서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國內基金은 管理主體, 設立目的 등의 基準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관리주체에 따라 政府管理基金과 民間管理基金으로 나누어진다. 政府管理基金은 政府機關이 管理主體가 되는 기금으로서 主務部處에서 運用計劃을 수립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와 大統領의 承認을 거쳐 운용되는데 國會에 대해서는 단지 運用計劃書와 決算報告書의 提出義務만 있을 따름이다. 民間管理基金의 경우 運用計劃이나 決算報告는 국무회의심이나 대통령의 승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主務部處의 裁量에 맡겨져 있고 국회심의 및 승인의무도 없다. 이런 점에서 兩 基金은 實質적으로 별다른 差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금은 또한 設立目的에 따라 事業 및 管理基金, 融資性基金 그리고 積立性基金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事業 및 管理基金은 特定한 目的事業을 遂行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고, 融資性基金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特定한 事業이나 部門에 대한 財政的 支援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며 積立性基金은 將來의 支出에 對備하여 資金을 積立하고 元本을 增殖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88년말 현재 60개 기금 중에서 사업 및 관리

기금은 32개(2兆 9,367億원)이고 용자성기금은 20개(13兆 9,241億원)이며 적립성기금은 8개(5兆 1,405億원)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관리기금에서는 融資性基金의 比重이 압도적으로 크고 민간관리기금에서는 용자성기금뿐 아니라 積立性基金의 比重도 적지 않다.

다음으로 기금을 基金規模別로 살펴보면 國民住宅基金, 國民投資基金과 같이 1兆원 이상의 大型基金이 10개이고, 5,000億-1兆원 규모의 기금은 3개, 1,000-5,000億원 규모는 12개가 있다. 반면 科學教育基金, 食品振興基金과 같은 零細基金도 적지 않아 매우 多樣한 分布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所管部處別 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財務部가 9개 기금에 4兆 4,315億원의 기금을 관장하여 가장 비중이 크고 農水産部(8개), 動力資源部(6개), 商工部(5개)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4個部處가 관장하는 기금수는 28개이고 기금조성규모는 11兆 7,966億원으로 총규모의 53.6%에 이르고 있다.

나. 基金의 造成

재론하거니와 國內基金은 61년 豫算會計法에 法的 根據를 두고 설치되어 줄곧 急速한 成長을 계속해 왔는데, 88년말 현재 국내기금의 造成規模가 22兆 13億원이라는 거대한 규모로 늘어났다. 이중 政府管理基金은 32개 종류에 기금의 조성규모는 12兆 2,907億원이고 民間管理基金은 28개 종류에 기금조성액은 9兆 7,106億원에 이르고 있다. 基金造成額 基準으로 정부관리기금은 55.9%의 비중을, 민간관리기금은 44.1%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國內基金의 對 GNP 比率은 85년 16.1%, 86년 16.0%, 87년 17.7% 그리고 88년 17.8%로 나타나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年度別 伸張率을 살펴보면 85년 14.4%, 86년 15.4%, 87년 28.9% 그리고 88년 18.0%를 나타내어 동기간의 一般會計部門의 伸張率(85년 12.1%, 86년 11.2%, 87년 14.5%, 88년 14.1%)을 上廻하고 있다. 특히 60개 기금중 상당수가 80년 이후에 설립됨에 따라 80년 一般會計의 54.2%, GNP의 9.6%에 불과했던 기금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80년대 들어 政府의 財政運用이 매우 非正常的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잘 드러내준다.

〈表 1〉 年度別 基金造成規模 (단위 : 億원, %)

| | 1980 | 1985 | 1986 | 1987 | 1988 |
|-----------|--------|---------|---------|---------|---------|
| 基金 | 35,144 | 125,343 | 144,676 | 186,491 | 220,013 |
| 政府管理基金 | 25,284 | 79,144 | 85,688 | 110,338 | 122,907 |
| 民間管理基金 | 9,860 | 46,199 | 58,988 | 76,153 | 97,106 |
| 一般會計 | 64,861 | 124,064 | 137,965 | 157,944 | 180,250 |
| 基金 / 一般會計 | 54.2 | 101.0 | 104.9 | 118.1 | 122.1 |
| 基金 / GNP | 9.6 | 16.1 | 16.0 | 17.7 | 17.8 |

資料: 經濟企劃院, 『財政關聯統計集』, 1989. 10.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基金別 造成規模를 살펴보면 88년말 현재 政府管理基金의 基金規模는 12兆 2,907億원으로 이 중 事業 및 管理基金이 1兆 7,145億원(13.9%), 融資性基金이 9兆 1,271億원(74.3%), 그리고 積立性基金이 1兆 4,491億원(11.8%)을 차지하고 있어 融資性基金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個別基金의 경우 外國換平衡基金, 國民投資基金, 國民住宅基金이 1兆 이상의 大型基金에 해당하고 糧穀管理基金, 遞信保險基金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政府出捐金은 32개 기금중 21개 기금에 기금조성재원으로 제공되었는데 總規模는 3兆 8,844億원으로 이 가운데 66.1%에 해당하는 2兆 5,687億원이 事業 및 관리기금에 제공되었고 융자성기금에는 1兆 3,134億원(33.8%)이 제공되었으며 적립성기금에는 불과 23億원이 지원되었다.

民間管理基金의 基金造成額은 88년말 현재 9兆 7,106億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融資性基金은 4兆 7,970億원(49.4%)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積立性基金은 3兆 6,914億원(38.0%)이고 事業 및 管理基金은 1兆 2,222億원으로 12.6%에 그치고 있다. 민간관리기금 가운데에서는 石油事業基金(4兆 98億원)과 公務員年

金基金(2兆 7,893億원) 그리고 私立學校教員年金(8,097億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政府出捐의 경우 兪자성기금이 3,649억원으로 전체의 63.5%로 제일 많고 사업 및 관리기금은 30.1%(1,731億원), 적립성기금은 6.4%(364億원)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政府出捐이 주로 融資財源支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基金의 運用

다음으로 年度別 運用現況을 살펴보면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80年 3兆 2,660億원에서 87年 8兆 7,819億원, 88年 12兆 3,853億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對一般會計 比率이 80年 50.4%, 87年 55.7%, 88年 68.7%로 늘어났다. 또한 민간관리기금부문은 80年 1兆 51億원(15.5%)에서 88年 4兆 9,789億원(27.6%)으로 신장하였다. 이에 따라 88年 현재 국내기금의 年間運用規模는 17兆 3,642億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96.3%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한 실정이다.

政府管理基金의 基金運用實態를 살펴보면 88年 현재 事業 및 管理基金이 7兆 2,640億원(58.7%)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融資性基金이 3兆 5,263億원(28.5%), 積立性基金이 1兆 5,950億원(12.8%)의 순으로 되어 있다. 民間管理基金의 基金運用實態를 살펴보면 총규모 4兆 9,789億원중 적립성기금이 59.2%로서 과반수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兪자성기금이 34.4%, 사업 및 관리기금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表 2〉

年度別 基金運用 現況

(단위 : 億원, %)

| | 1980 | 1985 | 1987 | 1988 |
|--------|--------------|--------------|---------------|---------------|
| 政府管理基金 | 32,660(50.4) | 64,027(51.6) | 87,819(55.7) | 123,853(68.7) |
| 民間管理基金 | 10,051(15.5) | 20,444(16.5) | 32,613(20.6) | 49,789(27.6) |
| 基金 合計 | 42,711(65.9) | 84,471(68.1) | 120,432(76.3) | 173,642(96.3) |

資料：經濟企劃院, 『財政關聯統計集』, 1989. 10.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註: () 안의 수치는 對 一般會計 占有比임.

〈表 3〉

企業會計方式 適用基金 收益性 現況 (1988)

(단위 : 百萬원)

| 種 類 | 營業利益 | 經常利益 | 當期純利益 |
|-------------|----------|----------|-----------------------|
| 1. 調達 | 13,485 | 14,557 | 14,557 |
| 2. 國民投資 | △10,600 | 17,278 | △17,278 |
| 3. 財産形成貯蓄獎勵 | △9,826 | △9,826 | △9,826 |
| 4. 外國換平衡 | △76,543 | △261,912 | △261,912 |
| 5. 糧穀管理 | △147,852 | 284,565 | 285,078 ¹⁾ |
| 6. 農業機械化促進 | 6,843 | 6,843 | 6,843 |
| 7. 農水産物價格安定 | 33,063 | 34,153 | 34,396 ¹⁾ |
| 8. 種子 | 433 | 120 | 120 |
| 9. 農漁民後繼者育成 | 5,961 | 8,172 | 8,114 ¹⁾ |
| 10. 農業産學協同 | △575 | 15 | 15 |
| 11. 石炭産業育成 | △755 | 6,024 | 6,024 |
| 12. 國民住宅 | 82,164 | 84,126 | 84,313 ¹⁾ |
| 13. 國民年金 | 28,034 | 28,034 | 28,034 |
| 14. 産災保險 | 8,959 | 8,959 | 8,959 |
| 15. 遞信保險 | △559 | △299 | △310 ¹⁾ |
| 16. 農漁家戶貯蓄 | 249 | 249 | 249 |
| 17. 報勳 | 4,047 | 4,062 | 5,949 ¹⁾ |
| 18. 愛國志士事業 | 56 | 56 | 56 |
| 19. 創業支援 | 419 | 465 | 465 |
| 20. 農漁村地域開發 | △662 | △662 | △662 |
| 21. 對外經濟協力 | 4,771 | 4,771 | 4,771 |
| 合 計 | △58,888 | 195,734 | 197,995 |

資料：財務部, 『基金決算報告書』, 1989.

註: 1) 特別損益發生에 따라 加減.

한편 정부관리기금의 收支現況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 3>과 같다. 정부관리 기금중 企業會計方式이 적용되는 기금은 21개로 88年 決算을 基準으로 볼때 總營業利益은 589億원의 赤字를, 經常利益과 當期純利益은 각각 1,957億원과 1,980億원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또한 21개 기금중 外國換平衡基金, 國民投資基金, 財形貯蓄獎勵基金에서 당기순이익이 赤字로 나타났고 國民住宅基金, 國民年金基金, 糧穀管理基金에서 큰 폭의 黑字가 이루어졌다. 現金會計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 總收入額은 3,258億원, 總支出額은 2,981億원으로 여기서 발생한 利益剩餘金 277億원은 기금조성액으로 이입하거나 익년도 수입으로 이월되었다.

라. 餘裕資金 運用實態

기금의 餘裕資金은 크게 一時的 餘裕資金과 常時的 餘裕資金으로 구분하는데 일시적 여유자금은 발생기간이 짧고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통상기금의 여유자금이라 함은 후자를 지칭한다. 積立性基金은 기금자체의 성격상 여유자금이 常例的으로 發生하고 있고 其他 基金의 경우에는 회계년도의 基金收入이 당해년도의 支出需要보다 많은 경우 여유자금이 발생한다.

88년말 현재 기금의 餘裕資金規模는 總資產 29兆 2,395億원의 25.6%에 해당하는 6兆 7,881億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정부관리기금이 1兆 7,842億원을, 민간관리기금이 5兆 39億원을 차지하고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運用形態別로 나누어 보면 銀行預金이 2兆 1,803億원(32.1%)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財政投融资特別會計預託(29.3%), 有價證券投資(19.0%), 第2金融圈預置(19.0%), 其他(5.2%)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별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銀行預金이 7,017億원으로 39.3%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제2금융권에치가 20.3%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특예탁(17.8%) 유가증권투자(13.8%), 기타(8.8%)의 순으로 되어 있다. 민간관리기금의 경우에는 대조적으로 財特預託의 비중이 33.4%(1兆 6,704億원)로 가장 많고 은행예금이 29.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투자의 비중도 20.9%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제2금융권예치(12.3%), 기타(3.9%)로 이루어져 있다.

〈表 4〉 餘裕資金 運用實態 (단위 : 億원, %)

| | 政府管理基金 | 民間管理基金 | 合 計 |
|-------|---------------|----------------|----------------|
| 銀 行 | 7,016.8(39.3) | 14,785.8(29.5) | 21,802.6(32.1) |
| · 要求拂 | 212.4 | 246.7 | 459.1 |
| · 貯蓄性 | 6,804.4 | 14,539.1 | 21,343.5 |
| 第2金融圈 | 3,622.9(20.3) | 6,165.2(12.3) | 9,788.1(14.4) |
| · 短資 | 1,644.3 | 1,228.3 | 2,872.6 |
| · 投信 | 1,958.6 | 4,936.9 | 6,895.5 |
| 有價證券 | 2,458.3(13.8) | 10,431.5(20.9) | 12,889.8(19.0) |
| · 株式 | 70.2 | 1,399.2 | 1,469.4 |
| · 債券 | 2,388.1 | 9,032.3 | 11,420.4 |
| 財特預託 | 3,180.0(17.8) | 16,704.0(33.4) | 19,884.0(29.3) |
| 其 他 | 1,564.0(8.8) | 1,952.8(3.9) | 3,516.8(5.2) |
| 合 計 | 17,842.0(100) | 50039.3(100) | 67,881.3(100) |

資料 :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註 : 年末殘 基準인.

다음으로 基金類型別 餘裕資金의 運用實態를 살펴보자. 8개 積立성기금중 4개 年金基金의 여유자금규모는 3兆 726億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構成比를 살펴보면 財特預託(39.7%), 有價證券投資(27.3%), 第2金融圈 預置(23.6%), 그리고 銀行預金의 순으로 되어 있다. 其他 積立性基金은 7,903 億원으로 銀行預金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제2금융권예치와 유가증권매입에 이용되고 있으며 재특예탁은 미미한 상태이다. 石油事業基金은 기금의 대부분(99.6%)을 銀行預金과 財特會計에 預託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 및 관리기금과 용자성기금은 여유자금의 규모가 적고 餘裕資金運用에 관한 規定 자체가 미비된 기금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10個 金融基金의 여유자금 運用규모는 1兆 1,440億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규모가 큰 信用保證基金과 輸出

保險基金은 기금의 대부분을 은행예금과 유가증권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表 5〉 主要基金의 餘裕資金 運用實態(1988) (단위 : 億원)

| | 第2金融 圈豫置 | 財特 預置 | 有價 證券 | 銀行 預金 | 其他 | 合計 |
|-----------------------|-------------|----------|----------|----------|-------|----------|
| 年金基金 ¹⁾ | 7,255.3 | 12,184.0 | 8,392.5 | 2,667.0 | 227.2 | 30,726.0 |
| 石油事業基金 | 68.0 | 7,400.0 | - | 8,976.0 | - | 16,444.0 |
| 金融基金 ²⁾ | 697.0 | 300.0 | 3,879.1 | 5,812.0 | 751.8 | 11,439.9 |
| 其他積立性基金 ³⁾ | 1,149.3 | - | 1,264.2 | 4,531.0 | 658.3 | 7,902.8 |

資料 :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註 : 1) 軍人年金基金, 公務員年金基金, 私立學校教員年金基金, 國民年金基金.

2) 財産形成貯蓄獎勵基金, 外國換平衡基金, 農漁家목돈마련貯蓄基金, 遞信保險基金, 對外經濟協力基金, 信用保證基金,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 技術信用保證基金, 輸出保險基金, 住宅金融信用保證基金 (10個).

3) 遞信保險基金, 産業災害補償基金, 새마을國民基金, 輸出保險基金 (4個).

2. 基金制度의 問題點

80年代 들어서 各種 基金이 濫設됨에 따라 一般會計를 基저로 한 正常的인 政府財政活動이 歪曲되는 結果가 야기되었고 國회의 심의나 승인절차가 필요없는 기금제도를 個別 部處의 自意的인 政策手段으로 활용하려는 傾向이 점차 늘어났다. 이러한 作금의 현상은 기금제도 자체의 的의, 즉 政府예산제도가 갖는 硬直性을 피하고 經濟社會的 與件變化에 彈力的으로 對應함으로써 정책추진의 效率性을 기하고자 하는 意義를 저하시키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表 6〉 年度別 基金設置 推移

| | 60-69 | 70-75 | 76-80 | 81-85 | 86 이후 |
|--------|-------|-------|-------|-------|-------|
| 政府管理基金 | 10(4) | 6 | 7(3) | 10(3) | 10(1) |
| 民間管理基金 | 1 | 5 | 10(3) | 10(2) | 7 |

資料 :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註 : () 내는 設어진 基金數임.

가. 政府豫算會計의 多重構造化

豫算會計法 7條에서는 國家가 特定한 목적을 위하여 特定한 資금을 運用할 必要가 있을 때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國內기금은 特定의 事業이나 部門에 대한 支援이나 特定資金의 效率的 管理를 目的으로 하여 설립· 運用되어 왔다. 그러나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자금용자의 상당 부분이 一般會計나 特別會計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歲入歲出豫算制度和 별개의 獨立된 制度로 運用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政府豫算會計의 重複化 또는 特別會計의 二重構造化를 초래하여 정상적 재정운용에 적지않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한다. 豫算會計法 9條에 의하면 特別회계의 設立要件을 (1)국가에서 特定한 事業을 運營할 때, (2)特定한 資金을 보유하여 運用할 때, (3)기타 特定한 歲入으로 特定한 歲出에 相當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必要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기금의 設立목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기금의 설치는 그 設置目的이 特別회계에서 다룰 수 없는 성격의 것이거나 아니면 獨立된 基金制度로 運營하는 것이 公共財源配分의 效率性을 提高시켜 주거나 政府의 財政運用의 效果를 強化시켜 주는 등 特別한 理由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選別的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年金基金과 같은 積立성기금과 일부 사업 및 관리기금을 제외하고는 基金規模를 縮小하고 財政投融資特別會計나 其他 特別會計를 통해 政策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現행 기금은 一般회계나 特別회계와 달리 豫算外 制度로 運營되고 있어¹⁾ 政府豫算과는 상이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은 國會의 審議나 議決節次를 거치지 않아 방대한 규모에 달하는 기금의 조성이나 運用에 대한 制度的 監督裝置가 결여되어 있고 주무부처에 의한 裁量的 處分에 거의 전적으로

1) 豫算會計法 72條는 기금은 歲入歲出豫算에 의하지 아니하고 運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금의 豫算外 處理를 허용하고 있다.

일임되어 있어 財政民主主義의 原則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권한의 과잉비대와 방만한 재정운동에도 일조하여 왔다. 이를테면 정부관리기금은 국회에 대해서는 단지 基金運用計劃과 決算報告義務만 가질 뿐 국회의 심의나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主務部處에 의한 기금의 自意的이고 行政便宜的인 運營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민간관리기금은 국회에 대한 제출의무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나 대통령승인절차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裁量의 幅이 지나치게 큰 형편이다. 물론 기금에 따라서 基金運用審議會를 통해 關聯 部處와의 協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고 대체로 주무부처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政府管理基金과 民間管理基金의 區分基準 模糊

또한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分類基準도 명확치 않아 기금제도의 效率性을 低下시키고 있다. 현행 기금은 基金管理의 主體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形式的인 區分基準에도 불구하고 양 기금은 財源의 出捐方法이나 性格 등에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간관리기금의 경우에도 정부관리기금과 같이 실질적인 관리권한이 정부부처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政府出捐의 비중이 큰 기금이 민간기금으로 취급되고 있거나 (中小企業振興基金, 輸出保險基金 등) 민간기관의 자체 기금이 조성재원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도 정부관리기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水産振興基金,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등)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 기금의 구분기준에는 많은 불합리성이 따른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자금규모가 큰 기금일수록 민간기금의 형태로 관리하여 자금운용이나 기금조성의 측면에서 所管部處의 裁量權을 強化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²⁾ 특히 自律的 基金運用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민간관리기금의 경

2) 張源宗, 「基金의 變則的 管理·運用問題」, 『財政論集』, 第3輯, 韓國財政學會, 1989. 3, p. 70.

우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권한이 주무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바, 민간관리기금에 대해서는 運用主體의 裁量權을 強化하고 민간기금 특유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類似基金의 重複과 不合理한 基金管理

融資性基金의 경우 기금별로 相異한 融資條件이나 節次 등으로 인해 公共資金 支援의 非效率性이 심화되고 있다. 즉 同一支援對象에 대한 同一條件의 原則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대상사업이나 업종에 대한 資金融資의 償還期間, 金利水準 등에 격차가 심하여 不公平한 支援惠澤 등 公共資金配分이 歪曲되고 있다. 예를 들면 技術開發을 위한 자금유자의 경우 工業發展基金의 적용금리는 6%인 반면 國民投資基金의 금리수준은 9-11.5%로 서로 상이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基金相互間 重複支援으로 인한 支援體系의 비능률이 심화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자금의 融資機能이 財特會計와 融資性基金으로 二元化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융자성기금의 경우도 유사한 지원목적을 수행하는 기금이 중복되어 지원효과를 감소시키고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石炭産業의 지원을 위해 정부관리기금 부문에서는 石炭産業育成基金이 설치되어 있고 민간관리기금에서는 石炭産業安定基金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지원대상규모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중복되어 자금배분의 편중이 초래되며 統一된 支援基準이나 節次의 不在로 인해 자금배분에 관한 결정이 資金事情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그때 그때의 財政與件과 部處의 方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민간적립성기금의 경우 受益者負擔基金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가 사실상의 관리주체가 되어 關係受益者에 의한 기금조성이나 운용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受益者負擔金, 民間出捐金의 운영실태나 利益配分·積立過程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않아 財政公開의 原則에도 위배되고 있다. 특히 純粹民間資金에 의해 조성된 민간관리기금조

차도 상당수가 정부관리기금으로 분류되어 합리적인 기금관리의 부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 基金運用에 대한 法的 規定 未備

또한 기금의 운용에 대한 체계있는 法的 規定이 결여되어 있어 효율적 기금 운용과 주무부처의 자의적인 운용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기금관리주체의 운용권한의 自律性에 대한 法的 保障이 결여되어 있고 기금운용의 公正性과 公共性을 보장하여 주는 장치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主務部處의 便宜的 基金運用의 폐해가 크고 민간관리기금운용의 재량성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財源造成, 基金運用, 餘裕資金活用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法的 規定이 명시되어 있지 못하고 다분히 형식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시정이 필요한데, 이는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수립이나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 통합관리체계와 평가체계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政府內的 統制의 強化와 基金管理基本法의 制定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운용원칙이나 기금관리기준에 관한 基本法 制定의 필요성을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입법화작업은 아직도 부진한 실정인데 앞으로 對象基金選定, 基金運用準則 및 國會의 監督裝置 등에 관한 구체적인 法的 規定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餘裕資金運用에 관한 統一的인 基準 未備

현행 기금제도하에서의 統一的 運用基準의 不在는 기금운용의 公共性原則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함은 물론 기금을 정부의 總體的인 財政活動과 적절히 連繫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금이 해당부처의 個別的 政策目標 達成을 위한 편의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됨에 따라 基金運用協議會를 통한 部處間의 事前協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적인 기금관리체계가 정립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餘裕資金 活用に 대한 統一的 基準이 未備되어 자금운용상의 공공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다. 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 8條에 의하면 특별회계 또는 법률에 의하여 1年 以上の 餘裕資金을 財特會計에 預託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公共資金으로의 優先預託을 허용하고 있으며 預託金額은 기금의 設置目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하고 예탁금에 대해서는 適正한 收益이 保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個別基金의 경우 여유자금의 운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個別基金運用に 대한 拘束力있는 基準適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餘裕資金規定 자체가 없는 기금이 국민투자기금 등 38개에 이르고 있고, 金融部門 預託規定이 있는 기금은 11개이며 財特會計預託規定이 명시되어 있는 기금은 公務員年金基金 등 불과 9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수익성기금인 積立性基金의 경우 여유자금의 비중이 크므로 향후 합리적인 운용기준을 정립하여 기금의 公共性原則과 收益性原則간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유자금의 재특회계 우선예탁규정에도 불구하고 強制規定이 없어 여유자금운용의 자의성을 견제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관리기금의 재특회계예탁비중이 정부관리기금보다 오히려 높아 정부관리기금의 公共性原則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75%에 달하는 금액이 金融部門 預託金으로 활용되고 있어 여유자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表 4 참조>.

III. 基金과 國民經濟

國內基金은 8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금의 造成 및 그 運用은 정부의 財政運用이나 通貨管理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기금의 餘裕資金運用은 金融市場의 機能이나 資金의 循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예를 들면 國民年金基金과 같은 年金基金은 방대한 기금운용을 통해 금융부문의 자금순환이나 금융상품의 수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종의 融資性基金 또한 公共投資나 財政投融資와 같은 공공부문의 財源配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금의 國民經濟的 效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基金과 財政運用

가. 基金과 財政收支

基金의 지속적인 膨脹樣相은 기금의 對 一般會計比率(88년 122.1%)이나 對 GNP比率(88년 17.8%)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기금의 이러한 과잉비대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테면 기금부문의 수지는 政府財政收支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재정수지보전을 위한 借入이나 國債發行은 정부의 통화관리와 민간부문의 자금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基金과 豫算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會計別 統合財政收支의 분석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84-88년 기간 중의 공공부문의 財政收支를 살펴보면 기금부문에

서는 매년 赤字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금부문의 적자는 84년 1兆 604億원에서 85-86년에는 일시 감소하였다가 87-88년 다시 1兆-1兆 1,500億원대로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이렇듯 기금부문의 적자 심화는 一般會計部門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를 훨씬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동기간중 기금부문의 적자가 없었다면 統合收支는 전부 흑자로 나타나게 되어 기금적자가 재정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基金運用의 合理化와 制度改善이 재정운용의 健全化를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表 7〉

會計別 統合財政收支 現況

(단위 : 億원)

|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
| 1. 中央政府 | △1,698 | △251 | 4,175 | 12,246 | 28,729 |
| 一般會計 | 9,739 | 8,401 | 12,325 | 22,398 | 39,272 |
| 特別會計 | △2,124 | △3,410 | △3,867 | △3,543 | △7,226 |
| 其他基金 | △9,313 | △5,242 | △4,283 | △6,609 | △3,317 |
| 2. 非金融公企業 | △1,279 | 1,757 | △74 | △2,310 | △8,716 |
| 企業特別會計 | 12 | 279 | △951 | 1,225 | △448 |
| 糧穀基金 | △1,542 | 1,298 | 640 | △3,841 | △8,296 |
| 調達基金 | 251 | 180 | 237 | 306 | 28 |
| 3. 合計(1+2) | △2,977 | 1,506 | 4,101 | 9,936 | 20,013 |
| 4. 基金收支 | 10,604 | △3,764 | △3,406 | △9,784 | △11,585 |

資料 : 財務部, 『韓國의 財政統計』, 各年度.

지금까지 이러한 統合收支補填을 위한 재원조달은 韓銀 및 預金銀行 借入, 國債發行 그리고 政府預金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 國債發行의 경우 發行規模가 85-86년을 제외하고는 3,000億-1兆 3,000億원에 달하였고 정부예금도 수지흑자년도인 88년을 제외하고는 감소를 나타냈고 예금은행차입도 87-88년을 제외하고는 2,000 -5,000億원 수준에 달하였다. 이처럼 기금수지의 악화는 수지보전을 위한 金融機關借入과 國債發行의 增大를 가져와 通貨增發要因이 되어 왔고 민

間部門의 資金事情 梗塞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는 일반회계부문의 흑자 실현을 통한 재정긴축 및 재정건전화노력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基金赤字 縮小는 향후 健全財政運用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表 8〉 年度別 財政收支 補填財源 內譯 (단위 : 拾億원)

|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
| 統合收支 | △298 | 151 | 410 | 994 | 2,001 |
| 基金收支 | △106 | △376 | △341 | △978 | △1,159 |
| 補填財源 | 298 | △151 | △410 | △994 | △2,001 |
| 國內借入(純) | 613 | 260 | 201 | △270 | △1,039 |
| 韓國銀行 | △1 | △7 | △10 | - | △525 |
| 預金銀行 | 536 | 285 | 199 | △364 | △142 |
| 國債發行 | 327 | 135 | 19 | 799 | 1,334 |
| 政府預金 | △438 | △128 | △212 | △1,113 | △2,204 |
| 其他 | 190 | △25 | 196 | 408 | 499 |
| 海外借入(純) | △316 | △411 | △611 | △724 | △962 |

資料 : 財務部, 『韓國의 財政統計』, 各年度.

나. 基金과 財政投融資

기금 가운데 융자성기금은 특정한 사업이나 부문에 대한 財政融資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88년 현재 정부관리기금중 융자성기금은 12개 종류로 기금규모도 12兆 3,853億원에 달하고 있다. 융자성기금 이외에도 軍人年金基金, 産災補償保險基金 등도 이와 유사한 융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융자성기금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금운용수익, 장기차입금, 채권발행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점차 政府出捐의 비중이 줄어들고 長期借入金, 債券發行收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財特會計(融資計定)에 의한 預託比重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82-89년까지의 融資總額은 18兆 4,938億원으로 이 중 51.4%(9兆 5,061億)가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部門에 지원되었고 農林水産業部門에 20.0%(3兆 6,990

億원), 鑛工業部門에 28.6%(5兆 2,887億원)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에서 특히 87-89년을 보면 農林水産業部門에 대한 지원 비중이 26.2%에서 30.3%로 대폭 늘어난 반면 鑛工業部門은 27.4%에서 22.6%로 격감하였으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部門은 46.4%에서 47.1%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광공업부문에 대한 지원 격감은 최근의 製造業部門의 不振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表 9〉 政府管理基金의 財政融資現況 (단위 : 百萬원)

| | 1987 | 1988 | 1989(豫算) |
|--------------------|-----------------|-----------------|-----------------|
| (農林水産業) | 674,718(26.2) | 801,916(30.6) | 712,321(30.3) |
| 山林開發 | 1,076 | 2,100 | 2,250 |
| 農水産物價格安定 | 289,174 | 292,432 | 326,971 |
| 農業機械化促進 | 34,978 | 73,972 | 38,796 |
| 農漁民後繼者育成 | 70,307 | 39,857 | 20,000 |
| 國民投資 ¹⁾ | 29,999 | 29,999 | 30,000 |
| 水産振興 | 3,810 | 4,439 | 5,190 |
| 農漁村地域開發 | 245,374 | 359,117 | 289,114 |
| (鑛工業) | 705,613(27.4) | 743,596(28.4) | 532,909(22.6) |
| 國民投資 | 537,400 | 496,528 | 370,000 |
| 石炭産業育成 | 113,960 | 89,402 | 80,051 |
| 軍需産業育成 | - | - | - |
| 防衛産業育成 | 11,737 | 8,122 | 15,738 |
| 電子工業振興 | - | - | - |
| 機械工業振興 | - | - | - |
| 中小企業創業支援 | 5,120 | 11,203 | 7,120 |
|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 1,195,064(46.4) | 1,074,164(41.0) | 1,108,996(47.1) |
| 海運振興 | - | - | - |
| 國民住宅 | 1,145,020 | 1,012,567 | 910,000 |
| 觀光振興開發 | 18,232 | 20,475 | 23,621 |
| 對外經濟協力 | - | - | 130,000 |
| 報勳 | 26,719 | 32,454 | 34,530 |

| | 1987 | 1988 | 1989(豫算) |
|--------|----------------|----------------|----------------|
| 軍人年金 | 2,093 | 2,668 | 2,845 |
| 職業訓練促進 | 3,000 | 2,000 | 5,000 |
| 産災補償保險 | - | 4,000 | 3,000 |
| 工業發展 | 37,396 | 138,341 | 60,000 |
| 合 計 | 2,575,395(100) | 2,619,676(100) | 2,354,226(100) |

資料：財務部, 『財政投融资白書』, 1989, pp. 152-153.

註：1)食糧増産産業 支援分限.

또한 기금의 1年 以上 餘裕資金은 財政資金 優先預託規定(財政投融资特別會計法 8條)에 의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정투용자의 주요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재특회계예탁기금은 기금의 總 餘裕資金 6兆 7,881億원의 29.3%에 달하는 1兆 9,884億원(88년 기준)에 이르고 있고 年金基金의 경우에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88년 재정용자재원에서 차지하는 기금 비중은 총 4兆 6,009億원의 50.0%에 달하는 2兆 2,982億원에 달하고 있고 향후에도 재정용자의 公共基金 借入比重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금은 재특회계 용자계정의 주요 조달재원의 역할 수행과 함께 自體 造成基金을 이용한 財政融資를 통해 公共財政支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表 10> 財政投融资財源 調達現況

(단위：億원)

| | 1985 | 1987 | 1988 |
|------|--------------|--------------|--------------|
| 一般會計 | 3,964(18.7) | 7,269(22.0) | 9,795(19.1) |
| 特別會計 | 471(2.2) | 498(1.5) | 488(1.1) |
| 借款資金 | 15,284(72.0) | 14,314(43.3) | 13,734(29.9) |
| 公共基金 | 1,504(7.1) | 11,004(33.2) | 22,982(50.0) |
| 合 計 | 21,223(100) | 33,085(100) | 46,009(100) |

資料：財務部, 『財政投融资白書』, 1989, p. 113.

다. 基金과 國公債發行

國公債 12條는 국가의 基金, 또는 特別計定の 負擔으로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는 國公債發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을 비롯한 일부 기금에서 財源調達을 위한 國債發行을 하고 있다. <表 11>에 의하면 86-89년 기간중 4개 기금의 國債發行殘額은 年平均 32.7%의 비율로 신장하여 86년 3,206億원에서 89년 7,487億원으로 그 규모가 늘어났다. 이들 4개 기금의 國債發行殘額에 대한 占有比는 86년 94.1%에서 89년 현재 72.8%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7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 11> 主要基金債券의 發行殘額 內譯 (단위 : 百萬원)

| | 1986 | 1987 | 1988 | 1989 |
|--------------|---------|---------|---------|---------|
| 外國換平衡基金債券 | — | 1,500 | 988.8 | 1,400.0 |
| 國民投資基金債券 | 869.7 | 954.0 | 1,060.5 | 860.6 |
| 糧穀基金債券 | 670.0 | 800.0 | 1,660.0 | 2,700.0 |
| 國民住宅債券(1,2種) | 1,666.2 | 1,826.4 | 2,078.3 | 2,526.8 |
| 合計 | 3,205.9 | 5,080.4 | 5,787.6 | 7,487.4 |
| (國債發行殘額 對比) | 94.1% | 79.6% | 76.3% | 72.8% |

資料 : 韓國銀行, 『調查統計年報』, 1990. 10, p. 74.

이들 基金債券은 비록 發行條件이나 賣出方法 등이 상이하지만 기금의 財源調達에서 政府출연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음에 따라 長期借入金과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福祉 및 公共서비스需要 증가에 따른 財政所要 膨脹과 金融自律化의 進展에 따라 財源調達을 위한 國公債發行은 상당히 촉진될 것이며 특히 수익성 확보가 유리한 公共投資의 경우 직접적인 財源調達보다는 使用者負擔 強化, 世代間 負擔의 公平을 위한 自體財源調達이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基金債券의 發行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즉 財源의

매출은 添加消化나 金融團引受와 같이 半強制的 方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자금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기금채권의 발행이 기금의 적자보전이나 특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滿期 등 發行條件은 동일하면서 發行主體만 다른 실정이다. 따라서 채권의 특성이나 만기구조에 따른 國公債市場의 合理的 價格體系의 形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表 12〉 主要 基金債券의 發行條件 및 消化方法

| | 外國換平衡 基金債券 | 國民投 資債券 | 對外經協 基金債券 | 國民住 宅債券 ¹⁾ | 糧穀基 金債券 |
|------|---------------|----------------|--------------|--------------------------|------------|
| 發行利率 | 實勢金利 | 定期預金 金利(1년) | 實勢金利 | 5.0% | 實勢金利 |
| 滿期 | 1年以內 | 3年 | 3-5年 | 5年 | 3-5年 |
| 賣出方法 | 賣出, | 金融團引受 | 賣出 | 添加消化 | 金融團引受 |
| 負擔主體 | 外國換平 衡基金 | 國民投資 基金 | 對外經濟 協力基金 | 國民住宅 基金 | 糧穀管理 基金 |
| 發行目的 | 通貨管理 | 重化學工業 育成 | 開途國 經濟協力 | 國民住宅 建設 | 糧特赤字 補填 |

資料：經濟企劃院, 『財政關聯統計集』, 1989. 10, pp. 228-229.

註：1) 1種 基準인.

2. 基金과 金融活動

가. 基金과 金融産業

기금의 운용, 특히 1년 이상의 餘裕資金 運用은 金融機關의 收益構造, 金融商品의 需給, 金融市場의 構造變化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금이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表 13〉에 잘 나타나 있다. 88년 基準(年末殘)으로 預金銀行의 預金에서 차지하는 기금의 비중은 政府管理基金이 1.21%, 民間管理基金이 2.55%로 합계 3.76%에 이르고 있으며 短資會社와 投資信託會

社預託金の 경우도 각각 4.08%와 4.58%에 해당하고 있다. 채권의 경우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債券發行殘額(國公債+會社債) 대비 3.44%로 기금이 채권시장에서 중요한 機關投資家으로서의 役割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株式投資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부관리기금은 70.2億원으로 미미한 실정이고 민간관리기금은 1,339.2億원으로 信用保證基金(113.4億원), 私立學校教員年金(675.8億원), 公務員年金(610億원), 住宅金融信用基金(182.7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의 두 민간연금기금이 주식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收益性을 重視하는 年金基金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表 13〉 金融商品別 基金 比重(1988)

(단위 : 拾億원)

| | 總 額 | 政府管理基金 | 民間管理基金 |
|--------------------|----------|----------------|--------------|
| 預金銀行 ¹⁾ | | | |
| 要求拂上貯蓄性預金 | 57,893.8 | 1,478.6(2.55%) | 701.7(1.21%) |
| 第2金融圈 | | | |
| 短資會社 | 7,091.0 | 122.8(1.73%) | 166.4(2.35%) |
| 投信會社 ²⁾ | 15,037.4 | 493.7(3.28%) | 195.9(1.30%) |
| 有價證券 | | | |
| 債券 ³⁾ | 33,185.9 | 903.2(2.72%) | 238.8(0.72%) |

資料 : 經濟企劃院, 『財政關聯統計集』, 1990. 10.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90.

註 : ()의 수치는 總額에 대한 占有比임.

1) CD와 外貨預受金은 除外함.

2) 受益證券, 證券貯蓄, 其他의 合計임.

3) 國公債와 會社債 發行殘額의 合計임.

나. 基金의 機關投資家 役割

年金基金을 비롯하여 기금규모가 크거나 여유자금의 비중이 큰 기금은 기

금운용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機關投資家の 役割을 담당하게 된다. 國民年金基金과 같은 연금기금의 경우 長期積立式 基金造成으로 인하여 향후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기금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 기관투자가 역할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年金基金은 證券, 投資信託과 같은 기관투자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¹⁾ 첫째, 연금기금은 長期性 負債構造를 가지므로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둘째, 연금기금은 定期的인 現金收入과 支出이 보장되므로 대규모의 流動性資産의 確保를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 셋째, 연금기금의 운용자산은 기본적으로 연금수혜자의 信託資産이므로 기금운용에 있어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넷째, 특히 私學年金基金과 같은 私的年金(private pension fund)은 기금수지균형과 수익성 제고가 중요하므로 적정한 投資收益率의 확보가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基金은 投信社, 證券社와 더불어 證市機關化를 主導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금은 주식이나 채권의 주요 수급자로서의 直接的 投資機能의 수행뿐 아니라 투신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受託金融機關의 選定과 投資指針 設定 이나 投資對象 制限 등을 통해서도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²⁾

또한 기금의 國公債投資는 정부의 國公債消化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되어 정부의 公共資金 확보에 유용한 조달방안이 되며 國公債 發行市場이나 流通市場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연·기금은 국공채의 주요 투자가이기 때문에 國公債金利가 自律化되는 경우 주요 투자가로서 국공채의 價格形成과 收益性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금의 국공채투자는 또한 通貨量의 增減과 일정한 연관관계를 가지므로 정부의 通貨管理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民間部門의 株式이나 會社債에 대한 투자 역시 관련채권이나 주식의 가격과 수익율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데에 따라 대규모 상

1) 李德勳, 張忠植, 『證券市場의 發達과 機關投資家の 役割』, 韓國開發研究院, 1986, p. 83.

2) 年金基金 특히 私的年金基金은 미국, 영국과 같은 先進國에서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는 기관투자가로의 위상을 점하고 있으며 證市機關化를 주도하고 있다.

기투자재원을 家計部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年·基金처럼 投資規模가 크고 長期投資的 性向을 가진 기관투자자를 자금조달자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個人投資家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有價證券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금과 같은 長期安定的 機關投資家의 역할 제고가 절실히 요망된다.³⁾

다. 基金運用과 金融構造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기관투자자와 함께 金融產業의 構造變化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年金基金의 경우 일차적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一定收益率이 기대되는 固定收益資產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자연 短期資金運用에 치중해 온 銀行이나 短資會社에 대한 투자보다는 投信의 收益證券이나 國公債 및 長期債에 대한 투자에 그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民間部門의 資金需要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長期債發行市場의 擴大와 債券市場의 活性化를 위한 기금의 역할 증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채권, 주식 등 直接金融商品에 대한 비중도 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金融證券化와 우리나라의 資本市場의 發達에 힘입어 기금의 자산운용이 直接金融資產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國公債市場에의 積極 參與와 優良會社債나 株式에 대한 投資 擴大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⁴⁾

3) 대부분의 先進國에서는 연금기금의 자의적 운용을 규제하고 연금가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年金基金運用에 관한 法的 規定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1974년)인데 동법은 年金需給權者의 保護, 資產運用制限, 受託者義務 - 소위 慎重한 管理者義務(prudent man rule) -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4) 孫正植, 張忠植, 鄭敬培, 『國民年金과 金融』, 全國銀行聯合會, 1988, pp. 157-160.

IV. 外國의 基金制度 概觀

본장에서는 外國의 年·基金制度의 機能과 運用實態를 간단히 개관하고자 한다. 外國의 年·기금제도는 그 나라의 財政構造와 運用行態에 따라 각기 독특한 기능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基金制度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對調的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先進國에서는 公的年金의 비중이 크고 政府基金의 설치는 公共財源의 效率性을 제고하거나 政府의 財政運用의 效果를 극대화시켜주는 등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選別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美國, 日本, 英國의 年·基金制度에 국한하여 外國制度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美國

聯邦政府의 歲入歲出豫算은 크게 聯邦基金(Federal Fund)과 聯邦信託基金(Federal Trust Fund)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聯邦基金은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세입·세출을 관장하는 예산회계계정으로 一般基金(General Fund), 特別基金(Special Fund), 公企業基金(Public Enterprise Revolving Fund), 政府內部管理基金(Intragovernmental Management and Revolving Fund)으로 나누어진다. 聯邦信託基金은 법에 의해 기금의 지출용도를 한정시키고 이와 같은 특정한 용도를 위한 特定稅源을 확보하는 세입·세출회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각 信託基金은 법에 규정된 事業遂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獨自的인 稅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安定的인 財源調達과 계획

적이고 지속적인 事業推進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聯邦高速道路 信託基金(Federal Highway Trust Fund)은 고속도로투자 촉진을 위한 高速道路 支援補助金(Federal Aid for Highways)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재원은 揮發油, 輕油에 대한 從量稅, 타이어稅, 트럭使用 및 販賣稅와 같은 道路使用有關稅源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在鄉軍人生命保險 信託基金(Veteran Life Insurance Trust Fund)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聯邦 國公債로부터의 收益金과 其他歲入을 基金財源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信託基金制度는 기본적으로 政府歲入歲出豫算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있어 국회의 審議·承認節次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立法院에 의한 제도적 감독장치가 보장되고 있다. 또한 支出內譯, 限度, 歲入規模 등 세입·세출에 관한 철저한 事前審議와 事後決算이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어 각 부처에 의한 자의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社會保障基金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탁기금이 豫算內 項目(on-budget item)으로 규정되어 있어 一般歲入 歲出豫算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美國의 信託基金制度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特別會計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基金別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안정된 財源確保가 보장되고 있고 國會의 제도적 감독장치가 보다 철저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기금제도는 특정한 目的事業을 위한 資金으로 운용되거나(예: 對外武器販賣信託基金), 特定部門에 대한 財政的 支援을 수행하거나(예: 聯邦高速道路信託基金), 장래의 支出所要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한다는 점(예: 聯邦公務員退職基金)에서 우리나라의 事業 및 管理基金, 融資性基金, 積立性基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信託基金은 支出部門에서 豫算計定基準으로 88년 1,732.3億불에서 90년 1,908.5億불로 증가하여 1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歲入基準으로는 2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聯邦豫算收支와 信託基金과의 관계

는 <表 14>에 나타나고 있다. 信託基金은 88년 978億불에서 90년 1,484.8億불로 흑자폭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聯邦基金은 大規模의 赤字를 기록하여 88년 2,529億불에서 적자가 대폭 늘어나 89년에는 2,834億불로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90년에는 적자가 일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2,410億불에 이르고 있다. 연방기금부문의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信託基金部門의 黑字增加로 인해 財政收支는 88년 1,551億불 적자에서 90년 925億불 적자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기간중 信託基金部門에서의 黑字發生이 없었다면 統合收支는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基金部門의 적자 심화가 공공부문의 財政收支 惡化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되고 있다.

<表 14> 聯邦豫算 財政收支 (단위 : 百萬불)

| 區 分 | 1988 | 1989 ¹⁾ | 1990 ¹⁾ |
|---------|----------|--------------------|--------------------|
| (豫算計定) | | | |
| 聯邦基金 | -252,887 | -283,398 | -240,985 |
| 信託基金 | 58,997 | 65,891 | 79,701 |
| 合 計 | -193,890 | -217,507 | -161,284 |
| (豫算外計定) | | | |
| 信託基金 | 38,800 | 56,011 | 68,775 |
| 총 계 | -155,090 | -161,496 | -92,509 |

資料 : Office of Management & Budget, 『Special Analys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1990.

註 : 1)은 推定值임.

90년 현재 聯邦信託基金은 醫療保險基金을 비롯하여 13개 종류에 基金規模는 현재 8,209億불에 이르고 있어 87-90년 기간중 82.3%의 伸張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歲入基準으로 볼 때 社會保障基金의 規模가 제일 크고 醫療保險基金, 聯邦公務員退職基金, 軍人退職基金, 그리고 失業基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신탁기금은 대부분 미정부가 발행하는 國公債나 優良會社債 및 各種 預金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90년 현재 總基金規模의 96.8%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종 金融資産에 투자되고 있다.¹⁾

<表 15>

聯邦信託基金 收入·支出 內譯

(단위 : 百萬불)

| 구분 | 支 出 | | | 收 入 | | |
|-------------------|---------|--------------------|--------------------|---------|--------------------|--------------------|
| | 1988 | 1989 ¹⁾ | 1990 ¹⁾ | 1988 | 1989 ¹⁾ | 1990 ¹⁾ |
| (豫算計定) | | | | | | |
| 鐵道公務員退職 | 8,977 | 9,332 | 9,630 | 10,012 | 10,017 | 10,032 |
| 肺 疾 | 639 | 682 | 662 | 640 | 680 | 662 |
| 在鄉軍人生命保險 | 1,134 | 1,198 | 1,230 | 1,423 | 1,436 | 1,432 |
| 聯邦公務員退職 | 28,431 | 29,944 | 29,777 | 47,016 | 48,967 | 51,207 |
| 軍人退職 | 19,009 | 20,088 | 20,611 | 33,117 | 34,680 | 34,892 |
| 失 業 | 18,598 | 17,800 | 18,300 | 26,984 | 26,397 | 26,294 |
| 醫療保險 | 87,676 | 98,408 | 108,525 | 103,001 | 119,124 | 138,994 |
| 聯邦高速道路 | 14,733 | 14,585 | 14,613 | 15,307 | 16,143 | 16,123 |
| 空港 및 航路 | 2,896 | 2,790 | 4,549 | 4,081 | 4,690 | 5,074 |
| 海外武器販賣 | 9,057 | 8,719 | 8,450 | 8,964 | 8,594 | 8,330 |
| 其 他 ²⁾ | 4,432 | 5,726 | 1,130 | 4,035 | 4,436 | 4,138 |
| 內部去來 等 | -22,358 | -25,000 | -26,630 | -22,358 | -25,000 | -26,630 |
| 合 計 | 173,225 | 184,271 | 190,848 | 232,222 | 250,162 | 270,549 |
| (豫算外計定) | | | | | | |
| 社會保障 | 220,257 | 232,268 | 246,717 | 259,056 | 289,278 | 315,492 |
| 內部去來 等 | -17,565 | -22,406 | -26,599 | -17,565 | -22,406 | -26,599 |
| 合 計 | 202,691 | 210,861 | 220,118 | 241,491 | 266,872 | 288,893 |
| 總 計 | 375,916 | 395,132 | 410,966 | 473,713 | 517,034 | 559,442 |

資料 : Office of Management & Budget, 『Special Analys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1990.

註 : 1) 推定值임.

2) 循環, 非循環基金의 合計임.

1) 우리나라의 경우 88년 현재 基金의 餘裕資金의 29.3%가 財政資金으로 예약되어 있고 金融部門 預託金의 비중은 65.2%에 그치고 있다.

<表 16>

聯邦信託基金 規模

(단위 : 百萬불, %)

| | 1987 | 1988 | 1989 ¹⁾ | 1990 ¹⁾ |
|-------|---------|---------|--------------------|--------------------|
| 合 計 | 450,155 | 548,432 | 672,581 | 820,853 |
| 投 資 額 | 431,057 | 527,028 | 649,688 | 794,707 |
| 保有殘額 | 19,097 | 21,405 | 22,895 | 26,147 |

資料: Office of Management & Budget, 『Special Analyses : Budget of the U. S. Government』, 1990.

註: 1) 推定值임.

2. 日本

日本の基金制度는 特別會計, 公庫, 公團 등 여러가지 상이한 형태로 그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特定事業이나 部門에 대한 資金支援의 기능은 - 우리의 融資性基金같은 - 財政投融資計劃의 집행을 통해 수행되며, 國民年金이나 公務員年金과 같은 年金基金은 國民年金特別會計나 厚生年金特別會計에서 기금조성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關聯特別會計나 公庫, 公團 등에서 우리의 기금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의 財政投融資計劃, 각종 公庫 및 公團 그리고 年金關聯特別會計를 중심으로 基金制度의 특성을 개관하기로 한다.

가. 財政投融資計劃

일본의 財政投融資는 재정투융자계획에 기초를 두고 행해지는 運用 및 資金運用部資金에 의한 國債引受로 이루어진다. 財政投融資의 재원은 郵便貯金, 厚生年金, 國民年金 등 각종 特別會計積立金이나 餘裕資金으로 이루어지는 資金運用部資金을 비롯하여 簡易生命保險資金, 産業投資特別會計 및 政府保證債로 구성된다. 財政投融資財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資金運用部資金으로서 전체 재원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表 17〉

財政投融資規模 變化推移

(단위 : 億엔, %)

| 年 度 | 財政投融資 | 一般會計1) | 特別會計1) |
|------|---------------|---------|-----------|
| 1986 | 221,551(6.2) | 540,886 | 1,371,226 |
| 1987 | 270,813(22.2) | 541,010 | 1,491,380 |
| 1988 | 296,140(9.4) | 566,997 | 1,568,040 |
| 1989 | 322,705(9.0) | 604,102 | 1,584,408 |

資料 :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0. 7, p. 2.

註 : 1) 歳出豫算基準인.

()안의 수치는 前年 對比 伸張率인.

〈表 17〉은 財政投融資規模의 伸張推移를 보여주고 있다. 86년 221,551億엔이었던 投融資規模는 89년 322,705億엔으로 증가하여 89년 一般會計歳出豫算(604,142億엔)의 53.4%를 그리고 特別會計豫算 1,584,408億엔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財政投融資財源의 內譯을 살펴보면 90년 현재 자금운용부자금이 284,533億엔으로 77.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간보자금, 정부보증채 그리고 산업자금특별회계로 되어 있다. 자금운용부자금은 그 비중이 88년 79.7%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財政投融資財源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90년 자금운용부자금의 調達內譯을 보면 回收金이 55.2%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郵便貯金(25.3%), 厚生 및 國民年金(19.5%)으로 구성되어 있다〈表 18〉.

資金運用部資金을 비롯한 재정투융자자금은 一般會計나 特別會計豫算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財政政策 등 정부의 여타 경제정책과의 연계하에 歳入歳出豫算에서 수행되기 어려운 국가의 財政運用役割을 수행하여 이른바 「第2의 豫算」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특히 자금운용부자금은 대규모의 國債를 引受하고 있어 國채소화를 원활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表 19〉에 나타나 있는 바 처럼 資金運用部資金에 의한 國債引受率은 81년 최고 33.2%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며 89년 현재는 10.8%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國債管理政策 遂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8>

財政投融资財源 現況

(단위 : 億엔, %)

| 區 分 | 1988 | 1989 | 1990 ¹⁾ |
|--------------------|---------|---------|--------------------|
| 産業資金特別會計 | 824 | 843 | 641 |
| 資金運用部資金 | 256,744 | 277,446 | 284,533 |
| · 郵便資金 | 84,633 | 60,444 | 72,000 |
| · 厚生 및 國民年金 | 58,669 | 47,925 | 55,400 |
| · 回收金 等 | 113,442 | 169,077 | 157,133 |
| 簡保資金 | 42,211 | 55,938 | 60,550 |
| 政府保證債 및 政府保證借入金 | 22,460 | 18,047 | 20,000 |
| 合 計 | 322,239 | 352,274 | 365,724 |

資料 :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0. 7, pp. 44-45.

註 : 1) 豫算基準입.

<表 19>

資金運用部資金의 國債引受比率

(단위 : 億엔, %)

| 區 分 | 國債發行額(A) | 資金運用部引受額(B) | 運用部引受比(B/A) |
|------|----------|-------------|-------------|
| 1981 | 133,401 | 44,240 | 33.2 |
| 1983 | 158,633 | 37,000 | 23.3 |
| 1985 | 194,598 | 60,551 | 31.1 |
| 1987 | 218,823 | 50,413 | 23.0 |
| 1989 | 202,695 | 21,918 | 10.8 |

資料 :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0. 7, p. 137.

資金運用部資金의 預託金利는 預託期間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7년 이상의 長期預託은 6.4%의 利率이 적용되고 있다. 貸出金利는 7년 이상의 예탁금에 대해 지불하는 預託金利와 동일한 수준이며 債券引受의 경우 利附國債는 6.48%, 政府保證債는 6.58%, 公募地方債는 6.62%를 적용하고 있다. 償還期間은 통상 10년(政府保證債와 동일)으로 元金均分償還方法을 적용하고 있으나 地方自治團體에 대해서는 원리금의 均分償還을 허용하고 있다.

자금운용부자금은 資金運用部에 예탁되어 統合管理되고 公益增進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의 財政融資機能이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財特會計의 財政融資와 融資性基金으로 二元化되어 있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줌은 물론 정부의 財政金融政策과의 連繫性을 높여 주고 그때 그때의 경제여건과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금운용의 대상에 財政融資, 國債 및 地方債 引受, 公社, 公庫, 公團 등에 대한 용자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財政資金運用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바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금운용이나 재정용자에 비해 規模, 運用效率性, 運用對象 등에서 훨씬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²⁾

나. 公的年金基金

일본의 公的年金基金은 크게 國民年金基金과 厚生年金基金으로 나누어진 다. 86년의 年金制度 改革에 따라 基礎年金은 國民年金基金으로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고 報酬比例年金은 각 연금기금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表 20〉 國民年金·厚生年金會計 財政推移

(단위 : 億엔)

| | 1986 | 1987 | 1988 |
|--------|---------|---------|---------|
| (厚生年金) | | | |
| 收入 | 153,189 | 165,081 | 182,091 |
| 支出 | 108,223 | 121,900 | 125,607 |
| (國民年金) | | | |
| 收入 | 49,563 | 51,882 | 55,389 |
| 支出 | 43,976 | 45,244 | 49,821 |

資料 :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0. 7, pp. 58~59.

2) 朴泰圭, 「公共資金의 運用方案」, 沈相達·李啓植(編),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89, pp. 138-140.

〈表 20〉의 國民年金과 厚生年金의 歲入歲出內譯을 보면 86-88년 기간중 年金收入이 支出을 초과하여 기금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日本의 年金制度가 기본적으로 積立方式(accumulation method)에 의해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누적재원의 상당부분이 資金運用部資金으로 예탁되어 주요한 재정투융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의 年金基金의 財特預託과 유사한 방식으로 公共資金化되고 있으나 財源規模나 比重이 훨씬 크고 통상 7년 이상의 長期預託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훨씬 안정적인 공공투융자재원으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表 20〉

다. 公庫 및 公團

公庫 및 公團은 우리나라의 기금에 해당하는 제도로써 특별회계와 함께 중요한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고는 특별한 法律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政府關係機關으로 통칭되며 현재 9개의 公庫와 2개의 銀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고는 우리나라의 기금제도처럼 資金의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政府豫算과 별도의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예산수립시 의무적으로 國會議決을 거치게 하므로써 立法府에 의한 牽制裝置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公團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特殊法人으로 豫算執行이나 事業計劃 등에 관하여 國家가 關與하고 있으나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고와 다르다. 공고나 공단의 運用財源은 資金運用部資金을 중심으로 한 財政投融資財源으로 대부분 확보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自體資金의 比重은 적은 편이다. 89년 결산기준으로 공고와 공단의 조성재원에서 차지하는 자기자금비율은 37.1%, 47.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재정투융자회계는 공고, 공단에 대해서 包括的 資金配分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財特會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公共資金을 運用하고 있다.

〈表 21〉 公庫・公團의 財源造成 內譯(1989)

(단위 : 億엔, %)

| 區 分 | 財政投金融資金 | 自己資金等 | 合 計 |
|-----------------------|---------------|--------------|--------------|
| 公 庫(9개) ¹⁾ | 127,757(62.9) | 75,312(37.1) | 203,069(100) |
| 公 團(36개) | 110,701(52.8) | 98,989(47.2) | 209,690(100) |

資料 :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0. 7, pp. 4~7.

註 : 1) 日本開發銀行과 日本輸出入銀行은 제외함.

()안의 수치는 占有比임.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日本式 基金運用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것과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公共資金의 용자지원기능이 財特會計融資와 融資性基金으로 二元化되어 있어 자금운용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재정용자는 資金運用部資金을 중심으로 통합관리되고 있어 景氣變動이나 정부의 財政投融資施策에 부응하여 자금운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公庫나 公團에 대해 포괄적인 자금배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공재원배분의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일본의 경우 80년 이후 10-30% 가까운 國債引受가 資金運用部資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國公債政策의 성공적 수행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長期安定的 財源調達, 效率的인 通貨管理, 원활한 資本市場의 機能 遂行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정부의 財政金融政策 및 公共投資政策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地方債의 주요한 소화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元利金 均分償還이나 償還期間 延長의 방식으로 地方債發行을 지원하고 있다.

세째, 우리나라의 기금은 豫算會計法에 근거한 豫算外 制度(off-budget system)로서 主務部處에 의해 자의적으로 運用되고 있으며 여타 경제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무엇보다도 國會의 審議·承認節次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어 立法府의 합법적 견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公庫豫算을 정부기관예산으로 하여 國會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公團

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여가 제도화되어 자금운용에 대한 法的·制度的 監督裝置가 확보되고 있다.

3. 英國

영국의 국가회계는 一般會計에 상응하는 統合國庫資金(Consolidated Fund), 國家貸付資金(National Loans Fund) 그리고 각종의 基金 및 會計로 구성된다.³⁾ 그 중 우리나라의 재정투융자제도와 기금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投融資會計에 상당하는 國家貸付資金과 主要基金을 들 수 있다. 국가대부자금은 일반회계와 투융자회계를 區分計理할 목적으로 68년에 제정된 國家貸付法에 근거하여 성립되었으며 國有企業, 政府關係機關, 地方公共團體에 대한 財政投資機能, 각 회계, 자금의 收支差 調整을 목적으로 한 資金融通機能, 國公債, 借入 등의 資金調達機能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 국가대부자금의 조성재원으로는 公債收入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貸付回收金, 貸付金利子 등이 포함되며 이들 재원은 주로 貸付, 國債費로 지출되고 있다. 공채수입은 주로 市場性國債(marketable bond)의 발행으로 조달되며 대부조건은 시장성국채의 발행조건에 연계되어 있다. 영국의 기금제도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國民保險基金, 過剩雇傭基金 그리고 地域開發基金 등을 들 수 있다. 國民保險基金(National Insurance Fund)은 46년 國民保險法(National Insurance Act)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社會保障基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재원조성은 고용주,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保險料收入과 일반회계로부터의 負擔金 등으로 이루어지며 기금의 대부분은 社會保障給付로 지출되고 있다. 65년에 제정된 過剩雇傭支拂法(Redundancy Payment Act)에 그 법적 근거를 둔 過剩雇傭基金은 해고근로자에게 지불한 이직금을 고용주에게 환급시키기 위하여 설립되

3) 영국의 제도에 관하여는 淺見敏彦(編), 『世界の財政制度』,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6 참조.

었다. 따라서 기금수입은 고용자의 過剩雇用基金釀出金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地域開發基金(Regional Development Fund)은 落後地域과 問題地域의 雇傭維持 및 新規雇傭創出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업의 域內流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 투자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地域開發交付金の 배정은 지원지역별 - 특별개발지역, 개발지역, 중간지역, 기타지역으로 차등배정하고 신규기계장치 설비, 광산설비 및 기타건축물에 대한 費用支援으로 구분된다.

<表 22> 國家貸付資金의 主要機能

| 財政投資機能 | 資金融通機能 | 資金調達機能 |
|--|--|--|
| 國有企業, 政府關係機關, 地方公共團體에 대한 貸付機能 수행 대부재원은 市場性公債 發行으로 조달하며 대부조건은 發行條件에 연계 | 統合國庫資金의 收支差 편입 公債收入과 잉글랜드 銀行의 納付金 편입 國民保險資金 및 國民貯蓄銀行預金은 國債 賣却을 통해 편입 | 各種 國公債發行 및 償還 ・支出超過시 또는 業務上 必要시 발행 ・조달방법, 기간, 조건은 財務省이 결정하며 議會承認 불필요 現金償還이 원칙이며 상환자금은 借換債 발행으로 조달 |

V. 基金制度의 改善方案

基金制度 改善의 基本原則은 기금운용의 彈力性和 自律性を 유지하는 동시에 公共性和 效率性を 조화시켜 정부의 余他 政策과의 連繫를 강화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改善方案은 현행 기금이 公共資金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금의 관리주체에 의한 自意的 基金運用의 害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集약된다. 이러한 本原則하에 다음의 運用改善方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1. 基金管理·運用에 대한 法的 規定 強化

基金制度의 設립 취지는 政府豫算制度가 갖고 있는 경직성과 보수성을 벗어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제도운용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基金規模가 一般會計를 상회할 정도로 비대해지고 기금의 종류도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금이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용되어 왔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體系的이고 包括的인 法的 規定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기금운용을 억제하고 정부의 총체적인 財政運用과의 連繫性を 강화시키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基本的 原則과 基準에 대한 法的 制度化가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¹⁾

1) 기금운용의 公正性和 公開性を 보장하여 주는 法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기금운용의 가장 큰 문제로서 이와같은 법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의적 기금운용을 막기 위한 嚴小限의 基準 設定과 이러한 기준의 준수를 감독할 수 있는 國會의 牽制裝置를 필요로 한다. 朴泰圭, 「國內基金의 運用現況과 運用方案」, 『投資金融』, 全國投資金融協會, 1989. 3, pp. 18-19.

그렇다면 기금제도에 관한 法的 規定 強化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법적 규정 강화는 기금제도의 기본적 원칙과 기준에 관한 基金管理基本法의 제정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법은 法適用 對象基金, 基金運用節次 및 準則, 餘裕資金運用基準, 國會의 監督機能에 관한 規定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基本法은 정부부처를 관리주체로 하고 있는 政府管理基金뿐만 아니라 公共性이 큰 民間管理基金까지 포함해서 적용해야 한다. 민간관리기금중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될만한 것으로는 基金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政府가 出捐하고 사업내용상 公共性이 큰 기금을 꼽을 수 있다.²⁾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금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모든 기금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規制裝置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금은 그 특유의 영역에 적합하도록 彈力性和 專門性を 염두에 두고 설치된 것이므로 이러한 個別的 特殊性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곤란하다. 따라서 기금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원칙 규정은 어디까지나 基金制度가 지향해야 할 專門化, 分權化, 自律化의 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基本法은 또한 基金運用に 관한 基本原則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이 기금의 設置目的이나 公共性を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용 대상이 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基金運用計劃의 수립과 基金運用 審議會 設置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政府管理基金의 경우 국회에 대한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의 단순 제출의무만 있고 국회의 審査·承認 權限이 없는데 정부부처에 의한 기금의 자의적인 운용을 규제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國會의 審議 및 承認權限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民間管理基金에 대해서도 정부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國務會議審議와 大統領承認 과정을 거치게 하므로써 정부내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運用計劃

2) 88년말 현재 28개 민간관리기금중 21개 기금에 政府出捐이 이루어지고 있어 適用對象으로 삼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의 國會報告節次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범적용대상이 되는 基金管理主體를 國會의 國政監査 對象機關으로 삼아 기금운용실태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³⁾

다음으로 餘裕資金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統一된 規定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금에 구체적인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거나 金融部門 預託規定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법에서는 餘裕資金運用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여 개별 기금법상의 餘裕資金運用規定에 대한 上位規定으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특히 餘裕資金의 公共性和 收益性的의 조화를 위해 財特會計預託과 金融部門預託에 관한 구분기준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基金制度의 整備

현행 제도하에서는 형식적인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政府管理基金과 民間管理基金의 二元化 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에 달하는 민간관리기금이 여러가지 면에서 정부관리기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그 구분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관리기금 가운데 公共性이 크거나 基金規模가 큰 기금은 政府基金化하여 기금관리의 公共性和 公正性을 제고해야 한다. 즉 현재의 임의적인 구분기준을 지양하고 基金의 性格, 財源造成方式, 基金運用의 效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관리기금은 公共資金源으로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민간관리기금은 기금 특유의 특성을 살려 彈力的이고 自律的인 運營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民間管理基金에 대한 이와같은 規定強化는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나 法適用 對象을 공공성이 큰 기금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 사실상 민간관리기금과 정부관리기금 사이에 實質的인 差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리한 규정은 아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유사한 목적을 갖는 기금을 통·폐합하여 基金管理의 效率性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이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二元化되어 있어 사업수행이 중복되거나 지원기능이 왜곡되고 있는 등 실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基金 統廢合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基金規模가 영세한 기금과 歲入歲出豫算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融資性基金과 財特融資計定을 一元化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 類似基金 統廢合

1) 農水産關聯基金

정부는 農水産部門에 대한 支援強化와 農漁民의 福利向上 등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개의 農水産關聯基金을 조성·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기금은 事業內容, 融資條件 그리고 財源調達方法에 있어 유사성이 많아 기금운용의 효율성 저하와 기금관리의 불합리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기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수산진흥기금 그리고 농어촌지역개발기금중 작목지원기금 부문을 農漁村發展基金으로 통폐합하여 일원화하였으며 農漁村 地域開發基金의 농지구입기금부문과 農地基金을 農地管理基金으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물 수매·비축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畜産振興基金(民間管理基金)을 정부관리기금인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으로 흡수·통합해야 할 것이다.

2) 石炭産業關聯基金

石炭産業支援을 목적으로 한 石炭産業關聯基金은 정부관리기금인 石炭産業育成基金과 민간관리기금인 石炭産業安定基金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양 기금은 設置目的이나 主要事業 측면에서 이렇다 할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간관리기금인 안정기금의 규모가 상대적으

로 영세하고 석탄사업이 한계산업인 점을 감안하여 石炭産業振興基金(가칭)으로 일원화하고 政府管理基金으로 기금관리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3) 에너지關聯基金

에너지이용合理化基金과 가스安全管理基金 그리고 海外資源開發基金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통합하여 政府管理基金으로 轉換해야 할 것이다. 앞의 세 기금은 基金規模가 영세하고 事業遂行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독립된 기금으로 존속시킬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석유사업기금에서 이들 기금의 사업내용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4) 信用保證關聯基金

현재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技術者信用保證基金을 信用保證基金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 기금은 공히 擔保能力이 미약한 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의 資金流通을 지원한다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운용주체도 신용보증기금으로 동일하며 재원조달방법도 다같이 政府出捐, 金融機關出捐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5) 交通安全關聯基金

민간기금인 道路交通安全協會基金과 交通安全基金을 道路交通安全基金으로 통합하고 기금관리방식도 政府管理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양기금의 사업내용에는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고 주무부처도 內務部(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와 交通部(교통안전기금)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6) 中小企業關聯基金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中小企業創業支援基金과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을 中小企業振興基金으로 一元化하여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의 주요 사업인 創業支援事業이 구조조정기금의 사업내용의 하나로 되어 있어 양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하등의 실익이 없으므로 양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運用規模 擴大 및 運用效率性 提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 基金廢止 및 政府豫算會計로의 轉換

기금의 設置目的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基金規模가 영세하고 追加財源造成이 곤란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기금, 豫算에서 類似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기금은 廢止하거나 一般會計나 關聯特別會計로 그 기능을 移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政府관리기금 가운데 一般會計 吸收對象基金으로는 농업산학협동기금, 애국지사사업기금, 종자기금, 식품진흥기금, 과학교육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農業產學協同基金과 愛國志士事業基金은 政府出捐이 중단되었고 基金運用規模가 영세하며 種子基金은 일반회계에서 이미 財源負擔을 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흡수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이다. 食品振興基金은 地方單位의 기금설치로 인해 中央單位의 기금이 불필요하므로 地方自治團體에 위임하도록 하고 科學教育基金, 靑少年育成基金은 기금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수행이 미비하여 別途基金으로의 존속이 불필요하므로 일반회계에서 그 기능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 融資機能의 一元化

현행 제도하에서는 재정지원기능이 각종 融資性基金과 財特會計의 融資計定으로 二元化되어 있다. 융자성기금은 自體造成된 기금을 재원으로 특정한 사업이나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재특회계의 융자계정은 기존의 融資財源과 기금의 財特預託資金을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同一한 支援對象에 대해 相異한 貸出條件이나 償還方法 등을 적용하는 모순을 지니므로 공공자금운용의 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즉 融資機能의 二元化는 重複投資로 인한 공공자금의 낭용, 각종 행정비용의 증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融資機能의 多機化는 정부의 총체적인 財政投融資政策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탄력성있는 공

共資金配分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재특회계는 公共資金의 統合管理·運用에 그 설치목적을 두고 있는 관계로 융자기능을 불필요하게 이원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융자성기금의 財特會計로의 吸收·統合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처럼 類似基金의 統·廢합과 함께 융자성기금을 재특회계 융자계정에 흡수하여 融資機能을 一元化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융자성기금 가운데 재특융자와 融資對象, 融資條件 등이 유사한 기금을 우선적으로 흡수·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융자성기금을 융자계정에 흡수하여 일본의 資金運用部資金처럼 統合的인 財政支援과 資金運用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융자기능의 일원화는 공공자금의 統合管理를 가능케 하고 資金配分의 衡平을 기하며 정부의 財政投融資政策에 부응한 신속적인 자금배분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융자기능의 일원화와 함께 資金造成의 一元化도 추진하여 실질적인 통합관리의 효과를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특회계는 財特會計法 6條에 근거하여 國公債發行을 통해 필요자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은 기금대로 基金債券을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금별로 債券發行이 分散되어 있어 기금의 발행과 상환이 財政投融資計劃에 합리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發行時期, 發行條件, 償還方法이 각각 달라 流通市場에서의 效率性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공채발행에 의한 공공자금조성이 재특회계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財源造成의 效率性을 提高해야 할 것이다.

재특융자계정으로의 吸收對象基金으로는 일차적으로 방위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산림개발기금, 공업발전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防衛産業育成基金은 총조성기금의 대부분이 政府出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別途基金으로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觀光振興開發基金과 山林開發基金은 87년 이후 정부출연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國民投資基金은 정부방침이 92년 폐지에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기금으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

다. 工業發展基金 역시 鑛工業部門에 대한 재정융자에서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重複支援과 行政費用 增大와 같은 재정지원상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또한 앞에서 통합대상으로 논의된 기금 가운데 石炭産業振興基金, 農地管理基金 그리고 農漁村發展基金도 재특융자계정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融資性基金을 흡수하여 재특회계융자계정에서 公共融資의 統合管理·運用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3. 基金運用計劃時 關係部處와의 事前協議 強化

현행 기금제도는 기금관리주체의 개별적 정책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개별 기금의 遂行事業과 財源調達 등에 관한 運用計劃의 수립시 정부의 財政運用, 財政收支 및 財政投融資計劃 등 총체적인 財政運用方向과의 정책연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基金運用計劃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주무부처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되고 있고, 經濟企劃院 등 관계부처와 협의되는 기금의 수는 많지 않은데 그나마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형식에 그치는 정도이다. 따라서 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이 정부의 歲入歲出豫算과 연계되도록 하고 전체적인 財政運用構圖와 조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금간 그리고 기금과 기타 재정과의 상호조정을 위한 協議會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部處別로 基金運用審議會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 심의·결정되고 있으나 部處間 利害關係의 조정이나 사전협의 등 기금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검토체계는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經濟企劃院長官을 위원장으로 한 基金運用調整委員會를 구성하고 이를 기존의 협의회와 연계시키고 基金運用計劃 樹立이나 支出計劃의 變更 등에 관한 협의시 경제기획원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基金管理費의 집행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감독장치를 확보하여 부처간, 기금간 기금운용

의 형평을 기하고 統合的 基金管理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表 23> 基金運用計劃 樹立方式 區分

| 主 要 基 金 | |
|--------------------------|------------------------------|
| 關係部處間 事前協議(19) | 糧穀管理, 國民住宅, 工業發展 畜産振興 |
| 政府管理基金(18) 民間管理基金(1) | |
| 主務部處 單獨決定(39) | 農水産價格安定, 國民投資 公務員年金, 石油事業 |
| 政府管理基金(14) 民間管理基金(25) | |

資料：經濟企劃院, 『基金運用現況』, 1989. 2, p. 8.

註：()안의 수치는 基金數인.

4. 餘裕資金 運用에 관한 基準 強化

여유자금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부처의 자의적 운용을 배제하고 餘裕資金運用에 관한 統合管理·運用이 요청된다. 財政投融资特別會計法 8條는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은 財特會計에 優先預託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강제성을 띠지 못한 까닭에 여유자금운용의 自意性을 견제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個別 基金根據法에 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財特會計에 優先預託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기금의 공공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預託規模 및 預託條件 등에 관한 사항은 基金管理主體와 經濟企劃院長官과 협의·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財特會計預託의 義務化는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모든 기금에 적용할 수는 없고 개별 기금별로 基金性格이나 收支現況 그리고 餘裕資金規模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예를들면 石油事業基金의 재특예탁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나 私立學校敎員年金과 같은 민간연금의 경우 마땅히 民間管理主體에 자금운용의 재량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 8條 5項에 따르면 재특회계에 예탁된 자금을 대해서는 기금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適正收益을 保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預託資金에 대한 적절한 수익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石油事業基金의 재특예탁금리는 연 5%에 불과하여 收益性保障의 原則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상당수에 달하는 民間管理基金의 財源造成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1年 滿期 定期預金利率 이상의 收益率이 보장되어야 한다.⁵⁾ 日本의 경우를 보면 재정투융자재원의 중심이 되고 있는 資金運用部資金의 預託金利는 통상 一般金融機關의 預託金利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어 우리의 경우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셋째, 餘裕資金의 統合管理를 위해 경제기획원 산하에 餘裕資金運用審議會를 설치하여 기금별 餘裕資金運用計劃과 운용실적의 審議·調整機能을 부여하고 여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성격, 재정상태, 수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餘裕資金 運用規模를 확정하고 基金別 財特會計 義務比率이나 預託優先順位를 差等化해야 할 것이다.

네째, 財政資金預託金이 長期性 公共資金化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長期預託에 대해서는 프레미엄부 금리를 적용하고 短期預託에 대해서는 금리를 차등화하는 彈力金利體系의 운용이 필요하며 10년 이상의 장기예탁에 대해서는 特別附加金利制의 적용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⁶⁾

다섯째, 88년도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보면 民間管理基金의 財特預託比率이 정부관리기금을 상회하고 있어 민간관리기금 특유의 수익성원칙이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民間管理基金 가운데 公共性和 國民負擔이 큰 기금에 대해서는 재특예탁의 義務比率 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여유자금을 이용한 不動産買入은 정부의 不動産投機抑制政策이나 土地公概念施策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불가피

5) 國民年金基金法은 이와 같은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소위 差別的 餘裕資金運用 基準의 적용).

6) 宋大熙, 柳一鎬, 文亨杓, 「財政投融資制度의 改善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90. 6, p. 14.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해야 할 것이나 株式投資의 全面禁止는 기금운용의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나 수익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株式市場의 活性化, 기금의 機關投資家 役割의 提高라는 당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이라 평가된다.⁷⁾

年金基金 - 특히 民間年金基金 - 의 일차적 목표가 年金收支均衡과 收益性確保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민간관리주체의 재량의 폭을 확대해야 하며 자금운용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국한하여 投資對象의 選定, 投資規模 등을 제한하는 등 운용에 탄력성을 발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年·基金法上的의 株式投資規定을 폐지해 基金管理者의 判斷에 따라 자의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시안정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자금활용을 위해 여러 기금이 共同出資하는 民間基金投資管理會社(private fund investment and management company) 設立이나 機關投資家 役割의 強化方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機關投資家 機能의 活性化

근래들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年·基金의 機關投資家의 役割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87년 이래 자본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비례하여 자본시장의 機關化現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금의 機關投資家 機能의 活性化는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企業의 安定的인 財源調達과 資本市場의 持續的 發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새로운 政策課題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처럼 기금의 역할 제고가 강조되는 이유로는 연금기금이나 기타 대형기금의 基金規模가 크고 장기안정적인 餘裕資金 活用이

7) 그러나 國民年金基金이나 石油事業基金과 같이 기금규모가 기대화하고 공공성이 큰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직접투자 대신에 투자신탁이나 은행과 같은 受託金融機關을 이용한 間接投資가 보다 소망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이 證市機關化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가. 外國事例

주요 선진국에서의 證市機關化 樣相을 보면 예외없이 年. 基金의 機關投資 家 役割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기관투자가의 株式保有比率이 80년 66.5%에서 87년 72%로 늘고 있고 채권의 경우도 국공채의 79.5%, 회사채의 78.9%를 비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 증시기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후생연금 및 우편저금을 재원으로 한 大藏省의 자금운용부자금의 國債引受比率이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공공자금의 기관투자가 기능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도 개인의 주식보유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公的年金과 民間年金의 보유비율은 83년의 19.5%에서 86년의 20.5%로, 相互基金(mutual fund)의 비중도 83년의 3.6%에서 86년의 5.5%로 증가하고 있다. 채권의 경우도 聯邦債, 地方債, 그리고 會社債의 기관보유비율이 91.7%, 64.1%, 92.4%에 이르고 있고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의 자산의 95% 이상이 有價證券에 투자되고 있어 증시기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英國도 주식의 기관투자가 비율이 57.6%(86년 기준)에 이르고 있고 國公債의 45.9%, 會社債의 69.9%가 기관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 이중 年金基金이 주식의 26.7%를 그리고 정부채와 회사채의 19.9%, 19.8%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7년 현재 株式의 機關投資比率은 34.2%로 개인투자비율 62.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債券의 경우에는 기관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國公債에 대한 기관투자비율은 83.4%, 會社債에 대한 기관비중은 93.3%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투자가의 투자패턴이 안정성 위주의 固定收益資産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表 24〉

機關投資家 有價證券 保有比率

| | 日 本(87년) | 美 國(86년) | 英 國(86년) | 韓 國(87년) |
|-----|------------------------|--|--|--|
| 株 式 | 72.0% | 31% (民間年金基金 15.5%) (地方政府基金 5.1%) | 57.6% (年金基金26.7%) | 34.2% ¹⁾ (個人 63.4%) |
| 債 券 | 國公債 79.5% 會社債 78.9% | 聯邦債 91.7% 地方債 64.1% 會社債 92.4% | 政府債 45.9% (年金基金 19.9%) 會社債 69.9% (年金基金 19.8%) | 國公債 83.4% ²⁾ 會社債 93.3% ²⁾ |

資料：韓國證券去來所, 「主要國의 證券保有와 投資性向」, 『株式』, 1989. 2.

註：1) 金融機關, 證券, 保險會社 및 其他法人 포함.

2) 預金銀行, 保險, 年金 및 其他 金融機關 포함.

나. 問題點

연·기금의 機關投資家 機能의 活性化가 絶실히 요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의 급속한 양적 확대와 구조변화에 따라 投資危險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精確한 투자정보의 수립·분석에 바탕을 둔 效率的인 分散投資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分析능력을 통한 危險分散(risk diversification)과 投資收益 提高를 可能하게 해주므로 그러한 필요성에 잘 부응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기금의 특성상 금융자산운용이 長期金融資産 위주로 운용될 수 있으므로 기관투자가 기능의 제고가 可能하다는 점이다. 셋째, 연·기금은 經濟규모의 확대에 따른 民間部門의 資金需要를 장기안정적으로 提供해줄 수 있는 財源調達시스템으로의 적합성이 뛰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基金 運用은 기관투자가 역할의 제고와 關連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問題點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기금의 餘裕資金運用에 있어 公共預託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반면 (88년 29.3% 차지) 有價證券投資는 불과 19.0%에 그치고 있는데 그나마 투자위험

성이 큰 株式投資는 제약되고 있고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固定收益資産에의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機關化와 證券化라는 대세에 비추어볼 때 연·기금의 비중 증대는 불가피한 변화로 보인다.

둘째, 다수의 연·기금이 各種 關係法規나 內部規定에 묶여 유가증권투자는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39개 연·기금이 규정상 株式買入에 직접 나설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90년 6월말 현재) 나머지 기금도 대부분 투신의 收益證券을 통한 間接投資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기관투자가 신규지정에도 불구하고 運用制限規定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證市活性化나 證市機關化 주도 역할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表 25 참조>.

셋째, 年金基金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수입과 지출이 있어 短期流動性 확보의 부담이 적고 연금기금의 부채는 長期性이므로 장기안정적 투자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有價證券投資 制限規定에 묶여 수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기금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넷째, 종래 연·기금의 투자는 發行市場에 국한된 國公債投資와 같이 보수적인 투자대상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운용수익의 저하가 불가피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공채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물론 種類, 利率 및 滿期構造 등이 體系化·多樣化되어 있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투자 운용이라는 면에서 그 한계를 깊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 改善方案

기금의 投資機能의 強化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기금운용의 公共性이 강조되는 政府管理基金의 경우에는 기금의 國公債引受 比重을 점진적으로 增大시키되 民間 年·基金에 대해서는 국공채인수의 무를 부여하지 말고 基金管理者에 의한 自律的인 投資運用이 이루어지도록 허

<表 25>

基金別 株式投資制限 内容

(단위 : 億원).

| 基金名 | 造成規模 | 運用制限規定 |
|----------------|--------|----------------|
| 1. 國民年金 | 17,500 | 공금리 이상 보장 상품 |
| 2. 殉國先烈愛國志士 | 30 | 공금리 이상 보장 상품 |
| 3. 社會事業福祉 | 260 | 중소기업은행 예치 |
| 4. 職業訓練促進 | 401 | 내부규정으로 제한 |
| 5. 對外經濟協力 | 1,538 | 재무부 운용지침 제한 |
| 6. 農漁村發展 | 5,500 | 재무부 운용지침 제한 |
| 7. 文化藝術振興 | 190 | 채권형 상품만 투자 가능 |
| 8. 山林開發 | 80 | 채권형 상품만 투자 가능 |
| 9. 防衛産業育成 | 100 | 중소기업은행 예치 |
| 10. 種子 | 120 | 농·수협만 거래 |
| 11. 石炭産業安全 | 2,455 | 제1금융권만 거래 |
| 12. 海外建設振興 | 585 | 제1금융권만 거래 |
| 13.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 | 867 | 통화채 매입 |
| 14. 信用保證 | 4,647 | 통화채 매입 |
| 15. 技術信用保證 | 163 | 통화채 매입 |
| 16. 住宅金融信用保證 | 193 | 시행령으로 제한 |
| 17. 農地管理 | 4,500 | 농·축협에 예치 |
| 18. 農藥管理 | 20 | 농협에 예치 |
| 19. 에너지利用合理化 | 145 | 산업·중소기업은행에만 예치 |
| 20. 科學教育 | 4 | 시행령으로 제한 |
| 21. 國民住宅 | 23,000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22. 交通安全振興 | 360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23. 中小企業共濟事業 | 719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24. 中小企業振興 | 3,294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25. 蠶業振興 | 52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26. 畜産振興 | 3,294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27. 觀光振興開發 | 250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28. 工業發展 | 3,000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29. 食品振興 | 16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30. 中小企業創業支援 | 150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31. 報勳 | 3,031 | 목적사업에 전액 지원 |
| 32. 農水産物價格安定 | 5,100 | 한은 기금계정에 예치 |
| 33. 國民投資 | 24,000 | 한은 기금계정에 예치 |

| 基金名 | 造成規模 | 運用制限規定 |
|---------------|---------|-------------|
| 34. 外國換平衡 | 13,406 | 한은 기금계정에 예치 |
| 35. 調達 | 2,900 | 재정용자 |
| 36. 財形貯蓄獎勵 | -- | 적자기금계정 |
| 37. 農漁村목돈마련貯蓄 | -- | 적자기금계정 |
| 38. 糧穀管理 | -- | 적자기금계정 |
| 39. 道路安全協會 | -- | 조성기금없음 |
| 39個 기금 | 121,605 | |

資料：內外經濟新聞, 1990年 8月 3日.

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發行市場에 국한된 국공채투자활동에서 벗어나 流通市場에 적극 참여하여 기금의 투자수익 제고와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資金運用部資金의 국채인수비율이 10-2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公的年金基金의 국공채 운용비율이 30.6%(86년)에 이르고 있어 공적 자금이 국공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요자의 하나로 되어 있다. 반면 民間年金基金은 수익율이 높은 會社債나 株式에 대한 투자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民間管理基金은 회사채나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수익을 제고에 힘쓰고 재량적 기금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근거법이나 관련부처의 有價證券投資 制限規定을 대폭 손질하여 기금의 투자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公務員年金基金의 경우 기금운용방법이 기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재량적 투자가 사실상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연. 기금의 不實投資를 방지하고 기금운용의 安定性和 公共性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관투자자들의 자산운용에 인위적인 不確實性和 비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초래하는 등 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기금관리자에 의한 재량적 투자운용의 폭을 넓히고 長期投資餘力이 있는 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여 주식시장에 資金供給을 확대하고 市場安定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세째, 종래의 固定收益資産 중심의 보수적인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수익을 극대를 위한 投資多變化가 요망된다. 왜냐하면 金融自律化와 國際化에 따라 신종 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고정수익자산의 實質 收益의 低下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위험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분산투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네째, 현행법상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選別的으로 인정되고 있는 稅制上的 惠澤을 年金을 비롯한 其他 基金에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年金기금의 유가증권투자에 대해서는 所得稅 및 法人稅를 非課稅하고 있어 年金기금의 투자 비중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株式賣却에 대한 非課稅惠澤으로 인해 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기금의 투자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專門人力의 確保와 基金管理者의 裁量權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사실상 현 제도하에서는 전문인력의 미비와 단기 금융 위주의 운용관행으로 인해 長期計劃的 포트폴리오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規制 撤廢와 함께 專門的 投資人力의 確保와 投資管理體系의 構築을 통해서 分散投資의 효율을 높여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비용절감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VI. 主要 基金의 改善方案

본장에서는 主要 基金의 問題點과 運用改善方案을 검토하기로 한다. 연금기
금중 기금규모가 크고 기금의 공공적 성격이 큰 國民年金基金과 公務員年金基
金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國民住宅基金도 포함하였다. 또한 기금운용과 관
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石油事業基金에 대해서도 문제점의 검토와 함께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國民年金基金

가. 概要

國民年金制度는 기업규모의 확대와 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라 福祉負擔能力
이 향상되고 平均壽命이 延長되어 老後生活對策의 必要性이 점점증하게 됨에 따
라 88년 이후 公的社會保障制度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¹⁾ 가입대상으로하는데 이는 事業場加入者와 농·어민
과 같은 地域加入者와 任意繼續加入者로 구분된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기본
연금인 老齡年金과 사망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중단시 지급되는 死亡年金,
障礙年金 그리고 一時的 返還金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年金給與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안정
이나 질병, 사고 등 각종 社會的 危險에 대한 社會的 保護裝置로서의 기능을 수
행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제도는 積立型 基金造成方式을 채택하고 있어 長期
間에 걸친 基金蓄積을 통해 國內資本形成에 이바지하며 대규모 공공사업 수행

1) 별도의 연금혜택을 받는 公務員, 軍人 및 私立學校 教職員과 기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을 위한 公共投資財源으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또한 餘裕資金의 활용을 통해 민간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며 金融活性化에 크게 기여한다.

나. 財源調達과 運用

국민연금기금의 財源은 加入者의 醜出金, 基金運用收益 및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과 같은 其他 收益으로 이루어진다. 도입 첫해인 88년의 純基金造成額은 5,279億원으로 가입자로부터의 醜出金이 5,069億원(9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運用收益(3.8%)과 其他(0.2%)로 충당하고 있다. 각출금의 비율은 88년 96.0%에서 89년 92.0%, 90년은 88.8%로 점차 낮추도록 계획되어 있고 운용수익의 비중은 89년 7.6%에서 90년 11.0%로 점차 증가시키도록 되어 있어 制度定着과 비례하여 醜出金에 대한 過多依存傾向을 점차 벗어나도록 계획되고 있다.

<表 26> 國民年金基金 造成規模

(단위 : 百萬원)

| | 1988 | 1989 ¹⁾ | 1990 ¹⁾ | |
|-----------|---------|--------------------|--------------------|-----------|
| | 累 計 | 累 計 | 當 年 | 累 計 |
| 醜 出 料 | 506,931 | 1,135,955 | 786,200 | 1,922,155 |
| 運 用 收 入 | 20,110 | 93,875 | 143,894 | 237,769 |
| 其 他 | 1,180 | 5,443 | - | 5,443 |
| 造 成 額 (計) | 528,221 | 1,235,273 | 930,094 | 2,165,367 |
| 年 金 給 與 | 301 | 10,230 | 94,472 | 104,702 |
| 資 產 取 得 費 | - | 50,000 | - | 50,000 |
| 貸 借 保 證 金 | - | 937 | - | 937 |
| 豫 備 費 | - | 563 | 2,800 | 3,363 |
| 使 用 額 (計) | 301 | 61,730 | 97,272 | 159,002 |
| 純 造 成 額 | 527,920 | 1,173,543 | 832,822 | 2,006,365 |

資料 :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 147.

註 : 1) 計劃值임.

다음으로 基金運用實態를 살펴보자. 기금 첫해인 88년의 기금운용규모는 5,282億원으로 이중 2,880億원(54.5%)이 財特會計에 預託되어 있고 第2金融圈預置는 1,807.3億원(34.2%), 有價證券買入은 591.7億원(11.3%)으로 되어 있다. 90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총 1兆 3,609億원중 10%에 미달하는 금액만이 연금급여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餘裕資金으로 활용하도록 계획되고 있어 재정자금예탁의 비중이 줄어들고 收益性 極大를 위한 유가증권매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연금기금은 公共事業部門과 增殖事業部門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는데²⁾ 공공사업부문의 연금자산 활용은 주로 財特會計預託이나 國·公債의 買入方式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증식사업부문의 기금의 증식을 위한 有價證券買入, 銀行預金 그리고 第2金融圈預置 및 其他 收益金融資産投資를 運用對象으로 하고 있다.³⁾

다. 問題點 및 運用改善方案

연금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年金給與를 위한 責任準備金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기금수익의 증식을 통해 受惠對象에 대한 適正한 惠澤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기금운용의 공공성원칙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運用改善方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財政部門과 金融部門에 대한 資金配分比率과 優先順位는 기금의 운용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國

2) 同法 83條는 기금의 管理·運用方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金融機關에의 預入 및 金錢信託
 - (2) 公共事業을 위한 財政資金에의 預託
 - (3) 投資信託 등의 收益證券買入
 - (4)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에서 直接發行하거나 債務履行을 保證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 (5) 加入者 및 需給權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
 - (6)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3) 동법에는 기금의 運用收益은 1年 滿期 定期預金利率 以上이 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收益性 維持의 原則이 규정되어 있다.

<表 27>

國民年金基金 運用規模

(단위 : 百萬元)

| 收 入 | | | | 支 出 | | | |
|-------------|---------|--------------------|--------------------|-------------|---------|--------------------|--------------------|
| 項 目 別 | 1988 | 1989 ¹⁾ | 1990 ¹⁾ | 項 目 別 | 1988 | 1989 ¹⁾ | 1990 ¹⁾ |
| 醜 出 料 | 506,931 | 629,024 | 786,200 | 年 金 支 給 | 301 | 9,929 | 94,472 |
| 運 用 收 益 | 20,110 | 73,765 | 143,894 | 資 產 取 得 費 | - | 50,000 | - |
| 滿 期 回 收 金 | - | 182,890 | 376,841 | 賃 借 保 證 金 | - | 937 | - |
| 決 算 上 剩 餘 金 | 1,180 | 4,263 | - | 豫 備 費 | - | 563 | 2,800 |
| | | | | 財 政 資 金 預 託 | 288,017 | 340,000 | 415,000 |
| | | | | 有 價 證 券 買 入 | 239,993 | 488,513 | 794,663 |
| 計 | 528,221 | 889,942 | 1,306,935 | 計 | 528,221 | 889,942 | 1,306,935 |

資料 :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 147.

註 : 1) 計劃值인.

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는 年金基金運用指針을 통해 公公事業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율과 기금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當該年度의 資金需要나 財政與件에 상당히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수지균형은 增殖收入規模에 달려 있으므로 금융부문과 재정부문에 대한 투자배분비율이나 투자의 우선순위가 일정한 基準이나 準則(rule)에 따라 결정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財政資金 預託比重을 낮추고 수익성 높은 金融部門 預託比重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재정자금을 통한 公共資金化는 公익사업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預탁금리가 長期低利의 성격을 지니므로 公益性原則과 收益性原則 사이의 相衝(trade-off)이 일어난다. 즉 公共部門의 收益率은 통상 금융부문보다 낮으므로 공공성 제고를 이유로 재정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基金運用 收益 저하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연금기금은 연금의 收支均衡維持와 加入者 및 受給權者의 實質的인 福祉增進을 위한 收益性 提高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땅히 金融部門의 投資 比重을 높여야 한다. 특히 재정자금을 이용한 공공투자는 消耗性資產의 성격이 강하고 資本의 懷妊期間도 길

며 수익율의 측정이 어려워 높은 期待收益率의 確保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財特會計에의 期待를 점진적으로 縮小하고 私的 金融資産의 比重을 增大시켜가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망된다.⁴⁾

세제, 연금기금의 機關投資家 機能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受託 金融機關을 이용한 間接投資方式을 보다 활성화하고 기금관리자의 책임하에 直接投資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보면 연금기금의 수익성제고를 위해서는 投資信託의 活用이 가장 有効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⁵⁾ 왜냐하면 투자신탁은 專門的인 投資運用을 행할 수 있어 有効적절한 分散投資가 가능한데 이는 직접투자로 인한 投資損失危險을 줄여주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期待된 자금은 별개의 信託資産으로서 독립된 투자신탁펀드로 운용되므로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⁶⁾ 연금기금의 기관투자가 기능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안의 하나로서 투신에 연금기금을 대상으로 해서 最低收益率 - 年 10% 水準의 - 을 보장해주는 收益率保障型 펀드를 별도로 설정토록 허용한다면 간접적으로 주식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신사들의 資金運用能力을 擴充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네째, 金融自律化와 급속한 金融革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受託機關의 擴大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금증식을 위한 受託對象機關으로는 銀行과 投資信託會社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生命保險會社와 證券會社에 수탁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은행기관도 시중은행뿐 아니라 地方銀行, 特殊銀行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⁷⁾ 短期資金의 효율적

4) 財政資金預託比重이 88년 54.5%에 달했으나 89, 90년에는 38.2%, 31.8%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5) 奉亨鐘, 「國民年金制度和 投資信託의 活用」, 『韓國投資信託』, 1987. 1 참조.

6) 證券投資信託法 26條는 投資信託의 受託會社가 수탁받은 信託資産을 수탁회사의 固有財産과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信託財産의 獨立性原則을 밝히고 있다.

7) 孫正植, 張忠植, 鄭敬培, 「國民年金基金의 效率의 運用方案」, 『韓國經濟研究』, 第3卷 第1號, 1989, p. 127.

운용을 위해서는 유동성과 수익성이 좋은 還買條件附債券(RP, Repurchase Agreement), 新種企業어음(CP, Commercial Paper), 어음管理口座(CMA, Cash Management Account) 등의 短期金融商品의 비중을 높여 연금급여 지급이나 기타 필요한 자금지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⁸⁾

다섯째, 연금기금이 財政資金으로 활용되는 경우 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借入基金에 대한 公債發行이 義務化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예탁시 債券이나 預金證書 등으로 지급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금기금의 財政借入의 경우에는 이러한 債務保證이 없기 때문에 자금수요 발생시 금융시장을 통한 필요자금의 유통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예컨대 정부공공사업의 경우 事業別로 獨立採算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있는 반면, 일반재정과 혼합되어 會計責任이 명확치 못한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투자대상사업의 公益性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年金基金 自體의 公共性 原則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다.⁹⁾ 따라서 事業別 債務保證을 통해 責任所在을 명확히 하고 債券確保를 保障받아 필요자금 발생시 연금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별 政府債務公債를 시장에 유통, 할인하여 流動性을 確保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財政部門과 金融部門과의 收益率 隔差를 政府財政에서 補填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利差補填方式은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확보도 가능케 하여 준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정부재정에 새로운 負擔要因이 되므로 단기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려우나 長期的인 觀點에서 신중히 고려해 볼만한 방안이라 하겠다. 특히 세출구조에서 社會保障支出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방법은 社會保障 強化를 위한 간접적인 방안의 하나로 평가된다.¹⁰⁾

8) 88년 餘裕資金의 第2金融圈 預置額을 보면 投資信託預託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9) 鄭敬培, 「國民年金基金의 市場原理保障과 民主的 統制」, 『國民年金』, 1989년 4월호, p. 23.

10) 우리나라의 경우 社會保障 財政支出이 中央政府歲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2%(1985)에 불과하다. 참고로 先進國의 비중을 보면 日本 19.0%(1984), 美國 29.1%(1985), 西獨 50.2%(1984), 프랑스 44.0%(1983)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李啓植, 「社會保障 財政支出의 增大와 財源調達 政策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8. 3, pp. 5~7.

일금제, 國民年金法의 基金運用에 관한 法規定은 그 내용이 모호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 基金管理의 實效性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同法 83條 2項의 규정에 따라 연금기금의 運用對象이 特定化되어 있어 資産運用의 硬直性을 가져오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과 같은 金融環境의 변화에 彈力的으로 對應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오므로 보다 폭넓은 自主的 資産運用權限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자금에의 예탁기간이 장기이고 예탁금의 중도 인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財特預託에의 지나친 依存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연금기금의 增殖事業部門 投資에 대하여 積정한 運用收益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受託機關의 基金運用에 제약이 되고 있다. 현행 기금법은 공공사업이나 기금증식사업 모두 기금의 운용수익이 1年 滿期 市中銀行 定期預金利率 以上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短期投資化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연금기금의 투자 대상을 固定受益證券 위주로 硬直化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石油事業基金

가. 概要

石油事業基金은 石油의 需給 및 價格安定과 石油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86년 종래 분리운영해 오던 備蓄基金, 安定基金, 開發基金을 統合한 것이다. 기금의 조성은 石油事業法에 근거하여 石油事業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과 基準原油價와 輸入原油價의 差額에 대해 징수하는 收入金, 기금의 借入金 그리고 基金運用收入金으로 이루어진다. 사업기금의 用途는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으로 국한되는데, 이것은 다시 石油備蓄, 開發 및 品質管理事業, 損失補填 그리고 에너지資源開發事業으로 구분된다. 기금의

사용형태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投資, 融資 및 補助로 구분된다.

나. 基金造成 및 運用

89년말 현재 기금의 造成規模는 5兆 2,445億원으로 86년 이후 4년동안 70%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조성액의 사용 용도를 보면 에너지事業이 3兆 3,304億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油價緩衝用 豫備資金에 1兆6,239億원(31%)이 그리고 이월자금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원형태별로 나눠보면 融資 63%(2兆 1,069億원), 投資 27%(9,225億원), 補助 9%(2,932億원) 그리고 其他 1%(48億원)로 되어 있다. 89년도 基金運用規模를 살펴보면 조성액과 융자회수금을 합쳐 5兆 5,673億원으로 投資 9,225億원, 融資 2兆 1,069億원, 移越資金 2,902億원, 財政預託 1兆 2,000億원 그리고 金融預託 4,239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事業對象別 支援實績을 보면 1979-89년 기간중 에너지부문에 36,532億원이 지원되어 69.2%를 차지하였고 油價緩衝用豫備資金으로는 30.8%에 해당하는 1兆 6,239億원이 지원되었다.

<表 28> 石油事業基金 支援實績(1979-89)

(단위 : 億원, %)

| 事業別 | 支援額 |
|---------------------|--------------|
| <에너지部門> | 36,532(69.2) |
| 1. 석유가스 部門 | 17,723 |
| 2. 에너지節約 및 代替에너지 開發 | 11,254 |
| 3. 其他에너지資源 開發 | 7,555 |
| <油價緩衝用 豫備資金> | 16,239(30.8) |
| 1. 産業體質強化 支援 | 4,239 |
| 2. 財政 預託 | 12,000 |
| 合計 | 52,771(100) |

資料 : 動力資源部, 韓國石油開發公社, 『石油事業基金白書』, 1990. 6, p. 93.

다음으로 餘裕資金 運用現況을 살펴보자. 86년 이래 國際原油價의 지속적인 下落에 힘입어 基金의 造成規模가 대폭 擴大됨에 따라 효율적인 여유자금 運用의 필요성이 證 明되었다. 여유자금은 에너지관련사업 지원분 이외의 財 源으로 運用되는데 金融機關預託, 國公債買入 및 財特會計預託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11) 89년 현재 여유자금 運用내역을 보면 財特會計預託金이 1兆 2,000億원이 고 金融機關預託金은 4,239億원으로 되어있다. 金融機關預託 4,239億원중 3,739億원은 産業體質強化事業에 나머지 500억원은 地下鐵事業에 지원되었다. 12)

<表 29> 石油事業基金 餘裕資金 運用內譯(1989)
(단위: 億원)

| 財 政 部 門 | 金 融 部 門 |
|----------------|---|
| 財特會計 預託 12,000 | 金融機關 預託 4,239 · 産業技術向上 2,989 · 産業構造調整 1,250 |

資料: 動力資源部, 韓國石油開發公社, 『石油事業基金白書』, 1990. 6.

다. 問題點과 運用改善方案

(1) 基金管理方式의 轉換

石油事業基金은 86년 이후 국제원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에 힘입어 매년 8,000億-1兆원에 달하는 기금이 징수되어 89년말 현재 5兆 2,445億원에 달하는 超大型 基金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은 民間管理基金의 43.4%, 國內基金의 19.1%를 차지하여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당초

11) 餘裕資金 運用에 관한 규정은 石油事業法 施行令 17條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銀行法의 적용을 받는 金融機關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銀行外 金融機關에의 預入 (2)國債,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에 의한 通安證券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債券의 買入 (3)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에 의한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12) 金融部門 預託은 89년말 현재 中小企業銀行에 2,280億원, 産業銀行에 1,739億원, 外換銀行에 220億원이 1年 定期預金 또는 讓渡性 定期預金 등으로 예치되어 있다.

에너지關聯 部門에만 사용하던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여유자금을 油價緩衝用 豫備資金으로 확보하여 油價 引上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餘裕資金運用 을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고 민간관리방식에 따라 行政府內的 統制나 國會의 牽制裝置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사업기 금을 현재의 민간관리기금에서 政府管理基金으로 轉換시켜 國務會議審議와 大 統領承認 節次를 의무화하여 政府內部的 統制를 強化하고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한을 부여하여 國會의 견제기능을 活性化시켜야 할 것 이다.

石油事業法은 基金運用計劃에 의거하여 餘裕資金의 運用을 石油開發公社(以 下 油開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유자금은 그 규모가 1兆 6, 000億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고 準租稅的 性格을 띠는 자금이므로 이를 유 전개발과 비축사업수행자인 유개공이 관리주체가 되는 民間管理基金으로 存續 시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여유자금의 운용은 정부의 經濟政策 과 총체적인 財政運用計劃과 연계되어야 하고 특히 國內油價管理와 에너지政策 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實際運用과 法的 體系를 一致시키고 기금관리 의 公共性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政府管理基金으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海外資源開發基金,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 가 스安全管理基金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통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油價緩衝用 豫備資金의 자의적 이용을 규제하고 신속한 유가완충기 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運用制度의 改善이 요청된다. 실제로 유가조절에 이 용되는 여유자금인 유가완충용 예비자금은 기금규모의 30.8%에 불과한 1兆 6, 239億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産業體質強化나 農漁村 및 都市零細民 支援과 같은 一般經濟部門에 대한 支援財源으로 활용되고 있어 신속하고 탄력적인 유 가완충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여유자금중 財政預託資金은 年利 5%에 1年滿期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 어 있으므로 運用期間이 사실상 2-10년에 이르고 있어 필요시 신속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에너지관련 이외의 부문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특회계예탁금을 상환받아 완충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一般會計 歲出豫算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豫算運用의 硬直性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상환받아 활용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시된다.

다음으로 金融機關預託은 대부분이 定期性 預金의 형태로 예치되어 있어 완충자금이 소요될 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技術開發이나 構造調整 등에 지원하거나 금융부문에 단기예탁하되 유가인상시에는 이를 회수하여 유가완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財政預託金에 대해서 債務公債發行(bond issue)을 義務化하여 필요시 市場消化를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基金運用의 公共性 提高

石油事業基金은 民間의 強制的 負擔金으로 조성되므로 準租稅의 性格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규모가 거대화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적지 않게 됨에 따라 基金運用의 公共性 提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公共性 提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로 石油事業法을 개정하여 여유자금의 관리방식을 油開公管理에서 政府管理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전반적인 經濟運用基調와의 調和를 위해 기금운용과 餘他 經濟政策과의 連繫를 強化해야 한다. 에너지部門 關聯資金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시설 확충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여 성장잠재력을 촉진하고, 餘裕資金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산업체질강화 및 경제구조조정과 유가완충기능을 제고하며, 예비자금의 財特會計預託이나 非通貨性 金融資産의 運用으로 通貨安定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석유사업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고 용자된 자금에 대한 用途 및 事後管理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기

금의 운용규모 및 용도확대에 따라 總融資金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不特定 需要者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基金最終取級機關에 대한 체계적인 事後管理가 요구된다. 특히 기금지원 목적에 충실하고 용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도 기금 최종취급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公務員年金基金

가. 概要

公務員年金制度는 所得의 喪失 또는 상당한 減少로부터 공무원의 생활을 보호하는 長期所得保障制度로서 국민연금, 사학연금과 더불어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公務員年金法 1條는 연금제도의 設置目的을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公務員 및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寄與하는 데 두고 있다.

연금기금은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으로 설치된 것으로 기금의 조성은 積立金, 決算上 剩餘金 그리고 基金運用收益金으로 이루어진다(同法 73條). 따라서 정부와 연금수혜자인 공무원이 공동으로 기금조성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기금의 관리주체는 公務員年金管理公團으로서 연금기금의 양대사업인 年金事業과 基金事業을 관장하고 있다. 연금사업은 제 급여의 지급과 이를 위한 비용의 징수로 이루어지며(年金會計) 기금사업은 증식사업과 후생복지사업으로 나누어진다(基金會計).

나. 基金造成 및 運用

88년말 현재 기금의 造成規模는 2兆 7,893億원에 이르고 있는데 積立金과 剩餘金 그리고 基金運用收益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운용수익의 구성비를 보면 基金轉入金(29.7%), 諸積立金(52.4%), 決算剩餘金(8.4%), 運用收益(9.5%)로 되어 있어 적립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여유자금의 運用實態를 보면(88년 기준) 財特會計預託이 49.3%(9,304억원)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有價證券投資 24.6%(4,645억원), 銀行 19.6%(1兆 2,566億원), 第2金融圈預託 12.1%(2,289億원)의 순으로 되어 있다.

〈表 30〉 公務員年金基金 造成・運用 現況(1988)

(단위 : 億원)

| | 造成 規模 | | 運用 規模 | |
|-------|-------|--------|-------------|------------|
| | 當 年 | 累 計 | 收 入 | 支 出 |
| 造成 額 | 8,393 | 54,852 | 基金轉入金 8,239 | 公共金融 9,844 |
| 使用 額 | 4,930 | 26,958 | 積立金 5,870 | 厚生福祉 7,895 |
| 純造成 額 | 3,463 | 27,893 | 決算剩餘金 2,331 | 基金增殖 8,836 |
| | | | 利益積立金 8,711 | 支拂準備 1,318 |
| | | | 運用收益 2,641 | |
| | | | 計 27,893 | 計 27,893 |

資料 :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 158.

다. 基金運用的 問題點

연금기금은 공무원에 대한 年金給與 支給에 充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이므로 기금운용수익 제고는 年金收支均衡과 安定的인 給與財源擴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된다. 지금까지의 기금운용실적을 살펴보면 基金運用收益率이 지속적으로 減少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公務員의 年金寄與率과 政府의 寄附負擔率의 增加要因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연금수익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체 연금의 50% 가량이 預託金利가 낮은 財政資金預託(1年滿期預金金利+加産金利 1%)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수익을 저하가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固定收益資産(fixed income assets) 위주의 保守的인 餘裕資金運用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금증식사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수익율이 낮은 厚生福祉事業의 比重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한 요인이 되고 있다(85년 24.6%에서 88년 28.3%로 증가). 이에 따라 基金運用收

益規模도 85년 2,278億원에서 86년 2,688億원으로 증가했다가 88년 2,641億원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기금의 목적이 장래의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확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낮은 厚生福祉事業의 擴大는 기금증식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年金制度의 成熟化로 인해 年金選擇者의 年金選擇率이 증대하고 있고 年金受惠者가 누적됨에 따라 기금적립에서 차지하는 轉入金의 비중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어 기금증식을 통해 基金會計의 年金會計로의 資金流出이 보전되지 못하는 경우 基金의 감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연금제도의 성숙화에 따른 效率的인 基金運用이 주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라. 改善方案

연금기금제도 개선의 基本方向은 基金收支均衡의 維持와 收益性 提高에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금기금의 成熟化에 따른 基金潛食에 대비한 수익성 확보와 기금운용의 공공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50% 수준에 달하고 있는 財政資金預託의 比重을 점진적으로 縮小하고 預受金利水準도 현재의 11% 수준에서 上向調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第2金融圈 預託金利가 14%를 上廻하고 있고 會社債收益率이 17-18%에 머물러 있는 여건하에서 여유자금의 50% 이상이 公共資金計定에 묶여있다는 사실은 公共性 提高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할지 모르나 基金增殖이 중요시되는 연금기금의 속성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美國이나 英國의 公的年金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國公債나 會社債 및 株式같은 有價證券投資에 대부분이 할애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年金積立金の 資金運用部資金預託에 대해서는 市場利率에 상응하는 수익율이 보장되고 있으며 투자대상도 국민의 생활안정 향상에 부합하는 부분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실례를 감안할 때 공공예탁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익성이 높은 有價證券保有比率을 높여가야 할 것

이다.

둘째, 현행 연금기금은 基金增殖事業뿐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福祉事業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후생복지사업은 공무원의 福祉向上을 위한 공공성과 복리성의 성격이 강하여 장래의 給與支給에 대비한 財源 확보라는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年金基金의 복지사업비율은 기금규모의 20% 수준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해 볼 때 88년의 28.3%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基金運用의 效率性 提高와 收益性 強化를 위해 복지사업의 비중을 점차로 축소하고 기금증식사업에 대한 財源배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금기금의 投資性向을 보면 80년대까지는 銀行定期預金과 國公債投資의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하여 保守的인 投資性向을 견지해왔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會社債, 收益證券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행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會社債買入의 경우 주로 發行市場을 통한 인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流通市場에의 참여에는 비교적 消極的이었다. 그 이유로는 발행시장을 통한 매입시에는 稅減免과 追加手數料 등의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流通市場을 통한 매입의 경우 收益率의 向上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유통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또한 회사채 중심의 단조로운 투자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分散投資를 통해서 수익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금기금의 機關投資家 機能이 提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금의 直接的인 株式投資는 상당히 制限되어 있다. 지난 몇년간의 투자실적을 보면 85년 114億원, 86년 110億원, 88년 100億원으로 미미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 年金基金의 證市機關化의 필요성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金融證券化 趨勢에 비추어 연금기금의 역할 확대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므로 마땅히 주식투자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기금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공적연금처럼 投資對象이나 投資業種의 制限과 같은 엄격한 投資指針에 따른 投資管理가 이루어져야 하며 受託機關을 통한 間接參與시에는 投信, 保險,

證券會社의 保障型 受益證券의 買入이나 收益保障附 約定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기금의 有價證券投資制限規定을 완화하여 기금의 투자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 물론 기금의 證市機關化로 인한 寡占的 市場支配力의 문제나 不公正 去來行爲危險 등 여러가지 잠재적인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나 증시의 기관화추세가 불가피한 추세임을 감안하여 各種의 制限規定을 緩和해야 한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不必要한 行政規制를 縮小하여 인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금의 관리자가 自己責任下에 效率的인 投資나 資產運用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自律性 缺如가 기금투자자의 수익을 저하와 소극적인 투자행태의 주인임을 감안할 때 規制 縮小의 必要性이 강력히 제기된다.

4. 國民住宅基金

가. 概要

國民住宅基金은 住宅建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81년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택건설촉진법 10조는 국민의 住居生活安定과 國民住居水準向上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이하 주택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住宅基金은 건설부가 관리주체가 되는 政府管理基金으로서 無住宅庶民을 위한 국민주택의 建設 및 垆地造成事業,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민간건설업자에 대한 資金支援 그리고 住宅資金貸出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택기금은 融資性基金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설부장관이 韓國住宅銀行에 委任하고 있다.

나. 基金造成 및 運用

주택기금의 재원은 政府出捐金, 國民住宅債券, 國民住宅基金債券, 福券資金, 請約資金, 국민연금기금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의 預受金, 借款資金 등으로 조성된다. 그중 國民住宅債券과 請約貯蓄이 주택기금 자금조달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第1種 國民住宅債券은 不動產登記와 建築許可시 참가소화되는 채권으로 상환기간 5년에 연이율 5%가 적용되며 第2種 債券은 債券入札制의 도입에 따라 발행되는 상환기간 20년, 연이율 3%의 장기저리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을 통한 재원조성은 85-88년중 8,328億원으로 資金調達總額의 30.4%를 차지하고 있는데 88년 이후 주택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조달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請約貯蓄은 85-87년 기간중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88년 이후에는 대폭적인 伸張勢를 나타내고 있다. 住宅基金債券은 주택채권과 청약저축에 의한 자금조달이 부진함에 따라 88년 實勢金利로 3,000億원을 발행하였고 政府出捐은 86-88년 2,300億원이 이루어졌으나 그 비중은 별로 크지 않으며 預受金을 통한 재원조달은 미미한 형편이다. 85-87년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조성이 부진하였으나 88년 이후에는 住宅景氣의 好況에 힘입어 資金調達規模가 급신상하고 있는데 이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택기금의 資金運用實態를 살펴보면 85-88년 기간중 住宅公社에 대한 대출은 8,484億원으로 전체 대출의 30.9%을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크고 民間建設業者는 8,232億원으로 30.0%를 地方自治團體는 5,823億원으로 21.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餘裕資金運用實態를 보면 은행에 2,219億원(88년 기준)이 예탁되어 있을 뿐 有價證券投資나 財特預託은 전무한 형편이다.

<表 31>

國民住宅基金 資金調達実績

(단위 : 億원)

| | 1985 | 1986 | 1987 | 1988 |
|-----------|-------|-------|--------|-------|
| 第1種國民住宅債券 | 1,400 | 1,323 | 1,449 | 2,144 |
| 第2種國民住宅債券 | 758 | 726 | 154 | 374 |
| 國民住宅基金債券 | - | - | 3,000 | - |
| 請約貯蓄 | 266 | △461 | △1,252 | 1,633 |
| 福券資金 | 107 | 115 | 113 | - |
| 政府出捐金 | - | 1,000 | 1,000 | 300 |
| 預託金 | △68 | 2 | 105 | △215 |
| 融資金回收 | 356 | 505 | 1,291 | 727 |
| 移越資金 | 3,420 | 1,293 | 262 | 380 |
| 借款資金 | 412 | 173 | 636 | 492 |
| 財政融資 | - | - | - | 1,300 |
| 借入金 | - | 750 | 650 | △100 |
| 其他 | 632 | 286 | 195 | 380 |
| 合 計 | 7,283 | 5,712 | 5,914 | 7,415 |

資料 : 韓國住宅銀行, 『業務統計年報』, 各年度.

<表 32>

國民住宅基金資金 運用現況

(단위 : 億원)

| | 1985 | 1986 | 1987 | 1988 |
|------------------|-------|-------|-------|-------|
| 地方自治團體 | 1,919 | 1,587 | 1,289 | 1,028 |
| 大韓住宅公社 | 2,016 | 2,018 | 1,951 | 2,499 |
| 民間建設業者 | 1,754 | 1,844 | 2,003 | 2,631 |
| 其他 ¹⁾ | 1,594 | 263 | 671 | 2,372 |
| 合 計 | 7,283 | 5,712 | 5,914 | 8,529 |

資料 : 住宅銀行, 『業務統計年報』, 各年度.

註 : 1)其他는 國家機關 貸出金, 空地造成基金 등을 포함한 금액임.

다. 問題點 및 運用改善方案

국민주택기금은 政府管理基金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건설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관리는 실질적으로 住宅銀行에 위임되어 있어 基金運用의 統合管理에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이나 자금운용의 一元化를 도모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住宅基金制度는 廢止하고 기초성재원을 전액 住宅銀行의 出資로 轉換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건설재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은행의 資金調達機能을 活性化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기금의 資金調達內譯을 살펴보면 政府出捐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5-88년 기간 동안의 정부출연규모는 2,300億원으로 총조달금액의 8.4%에 그치고 있다. 주택기금이 無住宅庶民에 대한 住宅供給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공급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때 政府出捐規模는 대폭 擴大되어야 마땅하다. 분양가상승과 건설비용의 급증으로 인한 庶民住宅需要者의 자금여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출연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住宅部門에 대한 財政融資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택기금에 대한 財特會計融資實績은 87년까지는 全無하였다가 88년에 1,300億원이 집행되었고 89년에는 2,300億원으로 융자금액이 증가하였으나 90년(계획)에는 다시 500億원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總融資金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8년 10.3%에서 89년에 13.2%로 늘어났다가 90년에는 3.9%로 격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일본의 주택 부문에 대한 財政投融資比率는 89년 23.1%, 90년 24.2%에 달해 公共資金을 통한 庶民住宅建設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각한 주택부족율과 그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의 하나로서 住宅基金에 대한 財政融資擴大는 당연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住宅債券發行의 活性化方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債券發行收入이 주택기금채권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大幅的인 新規財源造

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債券發行의 擴大와 債券需要擴充이 가장 효율적인 기금강화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채권수요확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年金基金과 遞信預金 등의 공공자금의 채권매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즉 연금기금은 定期的인 현금수입과 지출이 있고 장기성부채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長期安定的인 債券買入餘力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체신예금의 경우 체신자금운용상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체신자금이 政府政策事業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주로 金融資産 爲主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신예금을 주택기금채권 인수재원으로 운용하는 것은 자금의 效率性면에서나 公益提高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택채권을 市場實勢金利로 발행하여 年·基金, 保險, 投信 등의 기관투자자의 매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같은 주택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채권이 一定比率 編入된 펀드를 설정운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투신, 보험의 자산의 일정비율을 住宅債券引受에 활용케 하는 등의 制度的 需要振作方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生命保險의 경우 運用資産規模가 크고 長期的인 資産運用이 가능하므로 주택채권에 대한 수요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명보험의 有價證券保有比率의 한도내에서 주택채권의 보유비율을 제외해주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의 支援對象을 庶民住宅建設에 한정하여 기금본연의 목적에 충실토록 하고 融資對象機關은 地方自治團體, 住宅公社, 土地開發公社와 같은 公共住宅關聯機關으로 한정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민주택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³⁾

13) 姜文秀, 金寬永, 崔範樹, 『庶民住宅金融支援 擴大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90. 2, pp.

42~43.

VII. 要約 및 結論

本稿는 국내기금제도의 運用現況과 問題點들을 살펴보고 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具體的 方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기금제도의 問題點으로는 기금의 濫設과 그로 인한 정부예산회계의 多重構造化, 政府管理基金과 民間管理基金의 區分의 模糊性, 類似基金의 重複, 주무부처에 의한 恣意的인 基金運用, 餘裕資金運用に 관한 統一的 基準 未備 등이 지적되었다.

기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기 위한 基金制度 改善의 基本方向은 기금의 관리주체에 의한 恣意的 基金運用的 폐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財政金融政策과의 연계 강화에 두는 것으로 집약된다. 보다 구체적인 運用改善方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基金管理基本法을 제정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法的 規定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適用對象基金, 基金運用節次 및 準則, 餘裕資金運用基準, 國會의 監督機能에 관한 規定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基金運用計劃의 樹立이나 支出變更 등에 관한 部處間 事前協議를 강화하여 기금운용이 정부의 歲入歲出豫算과 연계되도록 하고 전체적인 財政運用構圖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基金運用調整委員會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기금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餘裕資金運用に 관한 基準을 強化하여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個別 基金法에 여유자금의 財特會計預託規定을 명시하고 예탁자금에 대해서는 適正收益이 保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餘裕資金運用審議會를 설치하여 기금별 여유자금운용

계획과 운용실적의 審議. 調整機能을 부여하고 여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네째, 年·基金의 機關投資家的 機能을 제고하여 資本市場의 活性化와 證市 機關化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별법과 關係부처의 有價證券投資 制限規定을 대폭 손질하여 기금의 투자기능을 활성화하고 年·기금에 대한 稅 制上의 惠澤을 확대해야 하며 基金管理者에 의한 自律的인 投資運用이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임의적 기금구분을 사양하고 基金性格, 財源造成方法, 基金運用의 效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政府管理基金은 公共資金源으로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民間管理基金은 기금 특유의 특성을 살려 彈力的이고 自律的인 運營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主要基金의 개선방안으로는 年金基金의 경우 연금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收益性 提高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고 주무부처에 의한 지나친 規制나 干涉이 最小化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其他 基金의 경우 設立目的이 달성되었거나 基金運用規模가 영세한 기금은 廢止하거나 일반·특별회계로 機能을 移管하고 類似基金은 과감히 統廢合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融資性基金의 경우 가능한 한 財特會計 融資計定으로 統合하여 통일적인 공공자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0년대의 새로운 재정여건하에서 財政機能의 正常化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제도 개선은 결국 公共資金으로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자의적인 기금운용의 폐해를 극소화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政府豫算制度가 갖는 保守性과 硬直性을 극복하여 공공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촉진하여 재정운용의 정책적 효과가 제고될 때 「第2의 豫算」으로서의 基金制度 本然의 國民經濟的 意義가 달성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編〉

- 姜文秀, 金寬永, 崔範樹, 『庶民住宅金融支援 擴大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90. 2.
- 姜信逸,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8. 4.
- 經濟企劃院, 『財政關聯統計集』, 1987.
- 經濟企劃院, 『1989特別基金運用計劃書』, 1989.
- 經濟企劃院, 『基金運用現況』, 1989. 2.
- 經濟企劃院, 『財政關聯統計集』, 1989. 10.
-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 公務員年金管理公團, 『業務現況』, 1985.
- 公務員年金管理公團, 『公務員年金統計』, 1989.
- 動力資源部·韓國石油開發公社, 『石油事業基金白書』, 1990.
- 閔載成 外,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波及效果』, 韓國開發研究院, 1986. 9.
- 閔載成, 「公的年金制度의 問題와 政策方向」, 宋大熙·權純源(編),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90.
- 朴泰圭, 「國內基金의 運用現況과 運用方案」, 『投資金融』, 全國投資金融協會, 1989. 3.
- 朴泰圭, 「公共資金의 運用方案」, 沈相達·李啓植(編),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9.

- 奉亨鐘, 「國民年金制度와 投資信託의 活用」, 『韓國投資信託』, 1987. 1.
- 孫正植, 『金融革新과 金融自律化』, 全國銀行聯合會, 1987. 12.
- 孫正植, 張忠植, 鄭敬培, 『國民年金과 金融』, 金融經濟研究所, 1988.
- 孫正植, 張忠植, 鄭敬培, 「國民年金基金의 效率的 運用方案」, 『韓國經濟研究』, 第3卷 第1號, 韓國經濟研究院, 1989. 5.
- 宋大熙, 柳一鎬, 文亨杓, 『財政投融资制度의 改善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90. 5.
- 李啓植, 『社會保障 財政支出의 增大와 財源調達 政策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8. 3.
- 李德勳, 張忠植, 『證券市場의 發達과 機關投資家의 役割』, 韓國開發研究院, 1986. 12.
- 李德勳, 張忠植, 「機關投資家의 포트폴리오 特性和 資產運用自律性」, 『證券金融』, 1987. 12.
- 張源宗, 「基金의 變則的 管理. 運用問題」, 『財政論集』, 第3輯, 1989. 3.
- 鄭敬培, 「國民年金基金의 市場原理保障과 民主的 統制」, 『國民年金』, 1989年 6號.
- 財務部, 『基金決算報告書』, 1988.
- 財務部, 『財政投融资白書』, 1989.
- 財務部, 『財政投融资統計』, 1990.
- 韓國產業銀行, 『國公債市場活性化와 長期金融機關의 役割』 經濟브리프 2, 第416號, 1989. 7.
- 韓國銀行, 「國民年金制度의 主要內容」, 『週刊內外經濟』, 1988. 1.
- 韓國銀行, 「國民住宅基金 運營現況」, 『週刊內外經濟』, 1988. 12.
- 韓國銀行, 『調查統計年報』, 各年度.
- 韓國長期信用銀行, 『韓國의 長期資金供給體系에 關한 研究』, 1986. 9.
- 韓國住宅銀行, 『業務統計年報』, 各年度.

韓國證券去來所,「主要國의 機關投資家 現況」,『株式』,1986. 6.

韓國證券去來所,「主要國의 證券所有와 投資性向」,『株式』,1989. 2.

〈外國編〉

日本 大藏省,『財政金融統計月報』,1990. 7.

淺見敏彦(編),『世界の財政制度』,金融財政事情研究會,1986.

Aaron, H, Economic Effects of Social Security,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2.

Blinder, A, "Private Pensions and Public Pensions : Theory and Fact," NBER Working Paper, No. 902, 1982.

Bodie, Z and J. Shoven, Financial Aspects of United States Pension System,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Bulow, J, "Analysis of Pension Funding under ERIS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7, 1982, pp. 435-452.

Greenough, W and k. Francis, Pension Plans and Public Policy, 1976.

Kotlikoff, L and D. Smith, eds. , Pensions in the American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Mcgill, D and D. Grubb, Jr, Fundamentals of Private Pensions, Homewood: Irwin, 1977.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pecial Analyses: Budget of the U. S. Government , 1990.

Shepherd, A et al. , Pension Fund Administration, Cambridge : ICOSA Publishing Limited, 1985.

〈 附 表 〉

〈附表 1〉

政府管理基金 現況

| 基金名 | 運用主體 (主務部處) | 類型 | 設置年度 | 設置目的 | 根據法令 |
|--------------------|--------------------------------------|------------|------|--|---|
| 放射線廢 棄物管理 報勳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사업 및 관리 | 1989 | 방사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및 처리 | 원자력법 (제84조) |
| | | 용자성 | 1981 |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간첩작전 보상 대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 보훈기금법 |
| 愛國志士 事業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사업 및 관리 | 1967 | 애국지사 및 유족지원 및 독립기념사업 수행 |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법 |
| 國民投資 | 재무부 (재무부) | 용자성 | 1973 |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건설촉진 및 수출증대 도모 | 국민투자 기금법 |
| 財形貯蓄 獎勳 | 재무부 (재무부) | 사업 및 관리 | 1976 | 저축의욕 고취 및 재산 형성 지원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
| 農漁家목돈 마련貯蓄 | 재무부 (재무부) | 사업 및 관리 | 1986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 (법정장려금 지급) |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 7조) |
| 外國換平衡 | 재무부 (재무부) | 사업 및 관리 | 1968 | 환율의 조정, 해외부문 통화증발의 흡수 및 외국환 수급의 불균형 조정 | 외국환관리법 |
| 對外經濟 協力 | 재무부 (재무부) | 용자성 | 1987 |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 지원과 경제 교류 증진 도모를 위한 자금의 확보·공급 | 대외경제 협력기금법 |
| 軍人年金 | 국방부 (국방부) | 적립성 | 1960 |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제급여 준비금 확보 | 군인연금법 및 군인연금 특별회계법 (제5조) |

| 基金名 | 運用主體 (主務部處) | 類型 | 設置年度 | 設置目的 | 根據法令 |
|--------------|------------------|------------|------|---|---------------------------------------|
| 防衛産業 育成 | 국방부 (국방부) | 융자성 | 1973 | 방위산업의 육성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7조) |
| 科學教育 | 문교부 (문교부) | 사업 및 관리 | 1984 |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제반사업의 원활한 수행 | 과학교육 진흥법(제7조) |
| 靑少年育成 | 체육부 (체육부) | 사업 및 관리 | 1989 |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 청소년육성법 (제27조) |
| 糧穀管理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 사업 및 관리 | 1970 |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화 추진 | 양곡관리 기금법 |
| 農水産物 價格安定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 융자성 | 1979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와 유통 근대화 촉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
| 種子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 사업 및 관리 | 1975 | 우량종자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 도모 | 주요농산물 종자법(제10조) |
| 農地管理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 융자성 | 1990 | 영농규모확대, 농지집단화,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 농어촌공사 설립 및 농지관리 기금설치법 |
| 農漁村發展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 융자성 | 1990 | 농어촌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공급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
| 工業發展 | 상공부 (상공부) | 융자성 | 1986 | 공업의 균형발전과 합 리화 촉진 및 공업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 상과 경쟁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 공업발전법 (제17조) |
| 中小企業 創業支援 | 상공부 (상공부) | 사업 및 관리 | 1986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에 의한 중소기업 저변확대 및 지역간 균형성장을 도 모 건설한 산업구조 구축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6조) |
| 石炭産業 育成 | 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 | 융자성 | 1977 | 석탄수급안정을 위한 비축 및 하계저탄자금 지원 | 석탄산업법 (제28조) |

| 基金名 | 運用主體 (主務部處) | 類型 | 設置年度 | 設置目的 | 根據法令 |
|--------------|------------------|------------|------|--|---|
| 國民住宅 | 건설부 (건설부) | 용자성 | 1981 |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전국민 주거수준 향상, 주택건설·공급을 위한 자금확보 및 지원 | 주택건설 촉진법(제10조) |
| 國民年金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 | 적립성 | 1987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제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확보 | 국민연금법 |
| 社會福祉 事業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 | 사업 및 관리 | 1982 |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의 지원 | 사회복지 사업기금법 |
| 食品振興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 | 사업 및 관리 | 1986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 | 식품위생법 (제71조) |
| 職業訓練 促進 | 노동부 (노동부) | 사업 및 관리 | 1977 | 직업훈련기금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을 재원 으로 직업훈련 촉진 | 직업훈련기금 법, 직업훈련 촉진기금법 |
| 産業災害 補償保險 | 노동부 (노동부) | 적립성 | 198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등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 준비금 확보 | 산업재해보상 보험특별회계 법(제14조) |
| 塵肺 | 노동부 (노동부) | 사업 및 관리 | 1985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진폐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수행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2조) |
| 觀光振興 開發 | 교통부 (교통부) | 용자성 | 1972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과 관광외화수입증대 | 관광진흥 개발 기금법 |
| 遞信保險 | 체신부 (체신부) | 적립성 | 1983 |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준비금 충당 및 복지 시설 투자 등 가입자 복지증진 | 체신보험 특별회계법 (제4조) |
| 調達 | 조달청 (조달청) | 사업 및 관리 | 1967 | 정부수요물자, 비축물자 의 구매, 보관, 조작 및 공급업무와 정부물자 관리의 효율적 수행 | 조달기금법 |

| 基金名 | 運用主體 (主務部處) | 類型 | 設置年度 | 設置目的 | 根據法令 |
|------------|------------------|------------|------|--|-----------------|
| 山林開發 | 산림청 (산림청) | 융자성 | 1973 | 산림개발에 필요한 장기 저리의 융자금재원확보 | 산림법 (제104조) |
| 農業産學 協同 |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 사업 및 관리 | 1978 |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 학교, 농업단지 및 영농 자간의 협동으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추진 | 농촌진흥법 (제10조) |

資料：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p. 18~33.

〈附表 2〉

民間管理基金 現況

| 基金名 | 運用主體 (主務部處) | 類 型 | 設置年度 | 設 置 目 的 | 根據法令 |
|----------------|------------------------|------------|------|---|--|
| 公務員年金 |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총무처) | 적립성 | 1960 |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부 로 부상, 질병, 폐질에 관한 적절한 급여 실시 | 공무원 연금법 |
| 韓國科學 財團 |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처) | 사업 및 관리 | 1977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충당 | 한국과학재 단법(제11조) |
| 새마을國民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내무부) | 적립성 | 1981 | 새마을운동본부의 재정 자립과 새마을운동의 민간주도화의 정착을 위한 기금 조성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
| 道路交通 安全協會 | 치안본부 (내무부) | 사업 및 관리 | 1980 |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의 충당 | 도로교통법 |
| 信用保證 | 신용보증기 금(재무부) | 사업 및 관리 | 1975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 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채무의 보증 | 신용보증 기금법 |
| 技術信用 保證 | 신용보증기 금(재무부) | 사업 및 관리 | 1987 |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 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 |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 農林水産業者 信用保證 | 농협중앙회 (재무부) | 사업 및 관리 | 1972 | 농·수·축협에서 대출 받고자 하는 담보능력 미약한 농어민의 신용보증 | 농림수산업 신용보증법 |
| 住宅金融 信用保證 | 한국주택은 행(재무부) | 사업 및 관리 | 1987 |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보증 | 근로자의 주 거안정과 목 돈마련지원 에 관한 법률 (제12조) |
| 法律救助 | 대한법률구 조공단 (법무부) | 사업 및 관리 | 1987 | 영세민 및 법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 법률구조법 (제23조) |
| 私立學校 教員年金 | 사립학교교 원연금관리 | 적립성 | 1973 | 사립학교직원의 퇴직· 사망 질병 등에 대한 급여 |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

| 基金名 | 運用主體 (主務部處) | 類型 | 設置年度 | 設置目的 | 根據法令 |
|--------------|--------------------------|------------|------|--|---|
| 私學振興 | 공단(문교부) 사학진흥재단(문교부) | 사업 및 관리 | 1989 | 제도 확립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 | 사학진흥 재단법 |
| 韓國獎學 | 한국장학회 (문교부) | 사업 및 관리 | 1989 | 장학회의 운용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 | 한국장학회법 |
| 國民體育 振興 | 국민체육진흥재단 (체육부) | 사업 및 관리 | 1972 | 국민체육진흥과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재정 지원 | 국민체육 진흥법(제18조) |
| 畜産振興 | 축협중앙회 (농림수산부) | 유자성 | 1976 | 축산기반의 안정적 구축 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축산법 (제42조) |
| 蠶業振興 | 대한잠사회 (농림수산부) | 유자성 | 1963 | 잠사업의 진흥과 생사류 수출 및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재원 확보 | 잠업법 (제18조) |
| 農藥管理 | 농약공업협회 (농림수산부) | 사업 및 관리 | 1982 | 농약의 품질고시를 위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조성 | 농약관리법 (제22조) |
| 中小企業 構造調整 | 중소기업 진흥공단 (상공부) | 유자성 | 1979 | 중소기업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 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3조) |
| 中小企業 共濟事業 |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 회(상공부) | 유자성 | 1982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와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판매 및 구매사업의 원활 한 수행을 지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87조) |
| 輸出保險 | 수출보험공 사(상공부) | 적립성 | 1968 | 무역거래상 수반하는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으로 인한 손실을 정책 보험으로 국가가 배상 | 수출보험법 (제30조) |
| 石油事業 | 석유개발공사 (동력자원부) | 유자성 | 1986 |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과 석유개발사업 추진 | 석유사업법 (제17조) |
| 海外資源開發 | 광업진흥공사 (동력자원부) | 유자성 | 1979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활 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 |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제11조) |
| 에너지利用 | 에너지관리 | 유자성 | 1980 |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에 | 에너지이용 |

| 基金名 | 運用主體 (主務部處) | 類型 | 設置年度 | 設置目的 | 根據法令 |
|------------|---------------------------|------------|------|--|---------------------------|
| 合理化 | 공단 (동력자원부) | | | 필요한 재원확보 | 합리화법 (제48조) |
| 石炭産業 安定 | 석탄산업합 리화사업단 (동력자원부) | 사업 및 관리 | 1987 | 석탄광업의 안정조작과 석탄광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 | 석탄산업법 |
| 가스安全 管理 | 한국가스 안전공사 (동자부) | 사업 및 관리 | 1984 |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 |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 海外建設 振興 | 해외건설협회 (건설부) | 사업 및 관리 | 1981 | 신규기업의 해외공사 대리 시공에 따른 손실보진과 국제협력기술 개발 등 해외건설 진흥 재원의 조성 | 해외건설 촉진법 (제 19조) |
| 交通安全 振興 | 교통안전 진흥공단 (교통부) | 사업 및 관리 | 1987 |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운 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충당 | 교통안전 진흥공단법 (제13조) |
| 文藝振興 | 문화예술 진흥원 (문화부) | 사업 및 관리 | 1973 |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문화예술부문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 등의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한 자금조성 | 문화예술 진흥법 (제6조 3항) |
| 環境汚染防止 | 환경관리공 단(환경처) | 융자성 | 1983 | 환경오염방지사업, 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방지시설투자에 관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 환경보전법 (제62조) |

資料：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p. 34~45.

〈附表 3〉

設立目的別 基金 分類

| 區 分 | 政 府 基 金 | 民 間 基 金 |
|-----------|--|---|
| 產業基金 | 山林開發基金, 種子基金, 農業產學協同基金, 農地管理基金, 農漁村發展基金, 石炭產業育成基金, 國民投資基金, 防衛產業育成基金, 工業發展基金, 中小企業創業支援基金, 國民住宅基金, 觀光振興開發基金 (12) | 畜產基金, 蠶業振興基金, 農藥管理基金, 海外資源開發基金,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 石油事業基金, 石炭產業安定基金, 가스安全管理基金,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 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 海外建設振興基金 (11) |
| 社會·福祉基金 | 軍人年金基金, 社會福祉事業基金, 塵肺基金, 職業訓練促進基金, 產業災害補償保險基金, 報勳基金, 愛國志士事業基金, 國民年金基金, 食品振興基金, 青少年育成基金 (10) | 새마을國民基金, 私立學校教員年金基金, 公務員年金基金, 國民體育振興基金, 環境污染防止基金, 道路交通安全協會基金, 法律救助基金, 交通安全振興基金 (8) |
| 流通基金 | 調達基金, 糧穀管理基金, 農產物價格安定基金 (3) | |
| 科學·教育文化基金 | 科學教育基金, 放射線廢棄物管理基金 (2) | 科學財團基金, 文藝振興基金, 韓國獎學基金, 私學振興基金 (4) |
| 金融基金 | 財形貯蓄獎勵基金, 外國換平衡基金, 農漁家戶돈叶貯蓄獎勵基金, 遞信保險基金, 對外經濟協力基金 (5) | 信用保證基金, 農林水產業者信用保證基金, 輸出保險基金, 技術信用保證基金, 住宅金融信用保證基金 (5) |
| 計 | 32 | 28 |

資料：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p. 48~49.

〈附表 4〉

造成規模別 基金 分類

| 區 分 | 政府管理基金 | 民間管理基金 |
|--------------|---|---|
| 100億원 미만 | 財形貯蓄獎勵基金, 農業產學協同基金, 愛國志士事業基金, 塵肺基金, 食品振興基金, 科學教育基金, 農漁家목돈마련貯蓄獎勵基金 (7) | 農藥管理基金, 法律救助基金, 蠶業振興基金, 海外資源開發基金, 石炭產業安定基金 (5) |
| 100~500億원 | 山林開發基金, 社會福祉事業基金, 職業訓練促進基金, 種子基金, 青少年育成基金 (5) | 輸出保險基金,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 交通安全振興基金, 가스安全管理基金, 새마을國民基金, 道路交通安全協會基金, 私學振興基金, 韓國獎學基金 (8) |
| 500~1,000億원 | 觀光振興開發基金, 中小企業創業支援基金, 防衛產業育成基金 (3) | 農林水產業者信用保證基金, 住宅金融信用保證基金, 科學財團基金, 技術信用保證基金 (4) |
| 1,000~5,00億원 | 調達基金, 軍人年金基金, 石炭產業育成基金, 報勳基金, 工業發展基金, 產業災害補償保險基金, 對外經濟協力基金 (7) | 國民體育振興基金, 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 畜產振興基金, 環境污染防治基金, 文藝振興基金 (5) |
| 5,000億원~1兆원 | 農地管理基金,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 (2) |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 (1) |
| 1兆원 이상 | 國民投資基金, 國民住宅基金, 遞信保險基金, 國民年金基金, 外國換平衡基金, 農漁村發展基金 (6) | 信用保證基金, 私立學校教員年金基金, 石油事業基金, 公務員年金基金 (4) |
| 計 | (30) | (27) |

資料：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p. 52-53.

註：放射線廢棄物管理基金과 海外建設振興基金의 基金造成額은 없음.

糧穀管理基金은 運營赤字에 따라 제외함.

〈附表 5〉

政府管理基金 基金造成規模

(단위 : 億원)

| 基金名 | 1980 | 1986 | 1987 | 1988 |
|-------------------------|----------|----------|-----------|-----------|
| 1. 調達 | 1,478 | 2,468 | 2,647 | 2,839 |
| 2. 財産形成貯蓄奨励 | 790 | - | - | 59 |
| 3. 外國換平衡 | 122 | 307 | 14,917 | 7,686 |
| 4. 糧穀管理 | 3,691 | 8,634 | 8,408 | 5,120 |
| 5. 種子 | 35 | 90 | 93 | 94 |
| 6. 農業産學協同 | 5 | 11 | 46 | 62 |
| 7. 社會福祉事業 | 5 | 133 | 145 | 185 |
| 8. 職業訓練促進 | 5 | 311 | 352 | 449 |
| 9. 愛國志士事業 | 26 | 32 | 32 | 33 |
| 10. 塵肺 | - | 20 | 14 | 4 |
| 11. 農漁家貯蓄奨励 | - | 28 | 2 | 89 |
| 12. 中小企業創業支援 | - | 200 | 353 | 507 |
| 13. 科學教育 | - | 4 | 4 | 4 |
| 14. 食品振興 | - | - | 1 | 14 |
| 15. 放射線廢棄物管理 | - | - | - | - |
| 16. 青少年育成 | - | - | - | - |
| 17. 山林開發 | 55 | 103 | 108 | 113 |
| 18. 國民投資 | 15,674 | 28,678 | 27,013 | 26,317 |
| 19. 防衛産業育成 | 303 | 363 | 366 | 420 |
| 20. 農業機械化促進 | 200 | 1,220 | 1,283 | - |
| 21. 農水産物價格安定 | 874 | 3,168 | 3,801 | 4,775 |
| 22. 農漁民後繼者育成 | 429 | 2,192 | 2,837 | - |
| 23. 水産振興 | - | 33 | 40 | - |
| 24. 石炭産業育成 | 132 | 2,120 | 2,195 | 2,493 |
| 25. 國民住宅 | - | 28,534 | 32,892 | 40,888 |
| 26. 觀光振興開發 | 355 | 700 | 759 | 823 |
| 27. 報勤 | 668 | 1,682 | 1,872 | 2,075 |
| 28. 工業發展 | 20 | 478 | 747 | 2,252 |
| 29. 農漁村地域開發 | - | - | 2,665 | - |
| 30. 對外經濟協力 | - | - | 309 | 556 |
| 31. 農漁村發展 ¹⁾ | - | - | - | 10,559 |
| 32. 軍人年金 | 417 | 1,151 | 1,305 | 1,456 |
| 33. 産業災害補償 | - | 497 | 615 | 1,026 |
| 34. 遞信保險 | - | 2,531 | 4,516 | 6,729 |
| 35. 國民年金 | - | - | - | 5,279 |
| 36. 農地管理 | - | - | - | - |
| 合計 | (25,284) | (85,688) | (110,338) | (122,907) |

資料：經濟企劃院, 『財政機關統計集』, 1989, 10.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要 機關資料』, 1990, 2.

註：1) 農漁村地域開發, 農漁民後繼者育成, 農業機械化促進, 水産振興育成基金의 合計임.

〈附表 6〉

民間管理基金 基金造成規模

(단위 : 億원)

| 基金名 | 1980 | 1986 | 1987 | 1988 |
|----------------------------|---------|----------|----------|----------|
| 1. 農地 ¹⁾ | - | 334 | 282 | - |
| 2. 農藥管理 | - | 14 | 17 | 20 |
| 3. 信用保證 | 1,342 | 3,047 | 3,879 | 8,276 |
| 4. 韓國科學財團 | 74 | 196 | 207 | 227 |
| 5. 海外建設振興 | - | 578 | 584 | 12 |
| 6. 道路安全協會 | - | - | - | 232 |
| 7. 交通安全振興 | - | 267 | 301 | 253 |
| 8. 國民體育振興 | 41 | 229 | 348 | 1,451 |
| 9. 文藝振興 | 12 | 167 | 172 | 236 |
| 10. 農林水產業者信用保證 | 92 | 302 | 766 | 972 |
| 11. 技術信用保證 | - | - | 67 | 166 |
| 12. 石炭產業安全 | - | - | 13 | 64 |
| 13. 住宅金融信用保證 | - | - | - | 194 |
| 14. 法律救助 | - | - | - | 12 |
| 15. 韓國獎學 | - | - | - | - |
| 16. 가스安全管理 | - | - | - | 107 |
| 17. 私學振興 | - | - | - | - |
| 18. 畜産振興 | 1,409 | 3,388 | 2,894 | 3,071 |
| 19. 蠶業振興 | 56 | 93 | 65 | 88 |
| 20. 海外資源開發 | 19 | 91 | 100 | 52 |
| 21. 에너지利用合理化 | 30 | 125 | 135 | 146 |
| 22. 石油事業 ²⁾ | 1,306 | 20,054 | 30,676 | 40,098 |
| 23. 中小企業構造調整 ³⁾ | 538 | 2,261 | 2,736 | 3,034 |
| 24. 中小企業共濟事業 | - | 359 | 521 | 683 |
| 25. 環境汚染防止 | - | 299 | 477 | 798 |
| 26. 輸出保險 | 156 | 423 | 446 | 488 |
| 27. 새마을國民 | - | 318 | 403 | 436 |
| 28. 私立學校教員年金 | 982 | 5,492 | 6,634 | 8,097 |
| 29. 公務員年金 | 3,803 | 20,951 | 24,430 | 27,893 |
| 合計 | (9,806) | (58,988) | (76,153) | (97,105) |

資料 : 經濟企劃院, 『財政關聯統計集』, 1989. 10.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註 : 1) 農地基金은 90년 정부기금인 農地管理基金으로 統合됨.

2) 80년 수치는 石油備蓄基金, 石油安定基金, 石油開發基金의 合計임.

3) 89년에 中小企業振興基金에서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으로 명칭변경됨.

〈附表 7〉

政府管理基金 基金運用規模

(단위 : 億원)

| 基金名 | 1980 | 1986 | 1987 | 1988 |
|-------------------------|----------|----------|----------|-----------|
| 1. 調達 | 10,110 | 11,613 | 13,266 | 15,869 |
| 2. 財産形成貯蓄獎勵 | 476 | 2,148 | 2,679 | 4,843 |
| 3. 外國換平衡 | 41 | 316 | 13,877 | 23,808 |
| 4. 糧穀管理 | 14,167 | 21,575 | 18,780 | 26,757 |
| 5. 種子 | 40 | 156 | 182 | 205 |
| 6. 農業産學協同 | 1 | 1 | 2 | 48 |
| 7. 社會福祉事業 | 105 | 49 | 49 | 158 |
| 8. 職業訓練促進 | 39 | 322 | 411 | 518 |
| 9. 愛國志士事業 | 6 | 6 | 66 | 6 |
| 10. 塵肺 | - | 79 | 81 | 56 |
| 11. 農漁家号돈마련貯蓄獎勵 | - | 205 | 196 | 183 |
| 12. 中小企業創業支援 | - | 200 | 213 | 172 |
| 13. 科學教育 | - | - | 4 | 3 |
| 14. 食品振興 | - | - | 5 | 14 |
| 15. 放射線廢棄物管理 | - | - | - | - |
| 16. 青少年育成 | - | - | - | - |
| 17. 山林開發 | 17 | 15 | 23 | 36 |
| 18. 國民投資 | 5,191 | 5,738 | 5,674 | 5,265 |
| 19. 防衛産業育成 | 303 | 161 | 133 | 162 |
| 20. 農業機械化促進 | 203 | 353 | 390 | - |
| 21. 農水産物價格安定 | 1,228 | 3,017 | 3,497 | 4,724 |
| 22. 農漁民後繼者育成 | 149 | 753 | 844 | - |
| 23. 水産振興 | - | 33 | 40 | - |
| 24. 石炭産業育成 | 73 | 2,043 | 1,677 | 1,520 |
| 25. 國民住宅 | - | 13,019 | 14,617 | 15,440 |
| 26. 觀光振興開發 | 137 | 257 | 182 | 210 |
| 27. 報勤 | 268 | 542 | 601 | 568 |
| 28. 工業發展 | 20 | 237 | 388 | 1,666 |
| 29. 農漁村地域開發 | - | - | 2,652 | - |
| 30. 對外經濟協力 | - | - | 302 | 558 |
| 31. 農漁村發展 ¹⁾ | - | - | - | 5,113 |
| 32. 軍人年金 | 85 | 214 | 277 | 311 |
| 33. 産業災害補償 | - | 497 | 615 | 1,251 |
| 34. 遞信保險 | - | 2,553 | 6,096 | 9,105 |
| 35. 國民年金 | - | - | - | 5,282 |
| 合計 | (32,660) | (66,103) | (87,819) | (123,853) |

資料：經濟企劃院『財政關聯統計集』, 1989. 10.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關聯資料』, 1990. 2.

註：1) 農漁村地域開發, 農漁民後繼者育成, 農業機械化促進, 水産振興育成基金의 合計임.

〈附表 8〉

民間管理基金 基金運用規模

(단위 : 億원)

| 基金名 | 1980 | 1986 | 1987 | 1988 |
|----------------------------|----------|----------|----------|----------|
| 1. 農地 ¹⁾ | — | 743 | 681 | — |
| 2. 農藥管理 | — | 10 | 8 | 9 |
| 3. 信用保證 | 645 | 1,860 | 2,200 | 1,816 |
| 4. 韓國科學財團 | 18 | 23 | 27 | 38 |
| 5. 海外建設振興 | — | 71 | 8 | 8 |
| 6. 道路安全協會 | — | — | 106 | 103 |
| 7. 交通安全振興 | — | 157 | 189 | 28 |
| 8. 國民體育振興 | 42 | — | 130 | 19 |
| 9. 文藝振興 | 63 | 89 | 99 | 305 |
| 10. 農林水產業者信用保證 | 28 | 78 | 517 | 232 |
| 11. 技術信用保證 | — | — | 67 | 108 |
| 12. 石炭產業安全 | — | — | 70 | 130 |
| 13. 住宅金融信用保證 | — | — | — | 201 |
| 14. 法律救助 | — | — | — | 0.9 |
| 15. 韓國獎學 | — | — | — | — |
| 16. 가스安全管理 | — | — | — | 169 |
| 17. 私學振興 | — | — | — | — |
| 18. 畜産振興 | 1,105 | 1,586 | 1,732 | 1,807 |
| 19. 蠶業振興 | 56 | 45 | 63 | 170 |
| 20. 海外資源開發 | 19 | 41 | 61 | 0.6 |
| 21. 에너지利用合理化 | 30 | 48 | 74 | 100 |
| 22. 石油事業 ²⁾ | 4,177 | 12,392 | 12,908 | 12,647 |
| 23. 中小企業構造調整 ³⁾ | 340 | 1,067 | 1,476 | 889 |
| 24. 中小企業共濟事業 | — | — | 529 | 687 |
| 25. 環境汚染防止 | — | 163 | 261 | 824 |
| 26. 輸出保險 | 80 | 29 | 23 | 41 |
| 27. 새마을國民 | — | 85 | 85 | 82 |
| 28. 私立學校教員年金 | 424 | 1,528 | 1,539 | 1,483 |
| 29. 公務員年金 | 3,024 | 9,257 | 9,760 | 27,893 |
| 合計 | (10,051) | (29,272) | (32,613) | (49,789) |

資料 : 經濟企劃院, 『財政關聯統計集』, 1989. 10.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註 : 1) 農地基金은 90년 정부기금인 農地管理基金으로 統合됨.

2) 80년 수치는 石油備蓄基金, 石油安定基金, 石油開發基金의 合計임.

3) 89년에 中小企業振興基金에서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으로 명칭 변경됨.

〈附表 9〉

政府管理基金 餘裕資金 運用現況(1988)

(단위 : 億원)

| 基金名 | 銀行 | | 第2金融圈 預託 | | 有價證券 | | 財特 預託 | 其他 | 合計 |
|----------------|-------|---------|-------------|---------|------|---------|----------|-------|---------|
| | 要求拂 | 貯蓄性 | 短資 | 投信 | 株式 | 債券 | | | |
| 1. 調達 | - | - | - | - | - | - | - | 870.3 | 870.3 |
| 2. 山林開發 | - | - | - | 15.4 | - | - | - | 0.4 | 15.8 |
| 3. 國民投資 | - | - | - | - | - | - | - | 68.8 | 68.8 |
| 4. 財產形成貯蓄獎勵 | - | - | - | - | - | - | - | 59.5 | 59.5 |
| 5. 外國換平衡 | - | - | - | - | - | - | - | - | - |
| 6. 農漁村목돈마련貯蓄獎勵 | - | - | - | - | - | - | - | 88.6 | 88.6 |
| 7. 軍人年金 | - | - | - | - | - | - | - | 144.2 | 144.2 |
| 8. 防衛産業育成 | - | 80.8 | - | - | - | - | - | - | 80.8 |
| 9. 糧穀管理 | - | - | - | - | - | - | - | - | - |
| 10. 農業機械化促進 | - | - | - | - | - | - | - | - | - |
| 11. 農水產物價格安定 | - | - | - | - | - | - | - | - | - |
| 12. 種子 | - | - | - | - | - | - | - | 19.6 | 19.6 |
| 13. 農漁民後繼者育成 | - | - | 189.2 | - | - | - | - | - | 189.2 |
| 14. 農業產學協同資金 | - | - | - | 46.9 | - | - | - | - | 46.9 |
| 15. 水產振興 | - | - | - | - | - | - | - | - | - |
| 16. 工業發展 | - | - | - | - | - | - | - | - | - |
| 17. 中小企業創業支援 | - | - | - | - | - | - | - | - | - |
| 18. 石炭産業育成 | - | - | 248.1 | - | - | - | - | 105.5 | 353.7 |
| 19. 國民住宅 | 208.7 | 2,010.0 | - | - | - | - | - | - | 2,218.7 |
| 20. 社會福祉事業 | 1.5 | 132.0 | - | - | 70.2 | - | - | - | 203.7 |
| 21. 職業訓練促進 | - | 195.0 | 247.0 | - | - | - | - | - | 442.0 |
| 22. 産業災害報償保險 | - | 176.5 | 766.4 | - | - | - | - | 82.6 | 1,025.5 |
| 23. 塵肺 | - | - | - | - | - | - | - | - | - |
| 24. 觀光振興 | - | - | - | - | - | - | - | - | - |
| 25. 遞信保險 | - | 4,121.9 | 112.2 | 74.7 | - | 1,256.3 | 300.0 | 87.8 | 5,952.8 |
| 26. 報勤 | 0.7 | 83.8 | - | - | - | - | - | 5.7 | 90.2 |
| 27. 愛國志士事業 | 1.5 | - | - | - | - | 30.0 | - | - | 31.5 |
| 28. 農漁村地域開發 | - | - | 101.4 | - | - | - | - | - | 101.4 |
| 29. 科學教育 | - | 4.4 | - | - | - | - | - | - | 4.4 |
| 30. 國民年金 | - | - | - | 1,807.3 | - | 591.7 | 2,880.0 | 3.0 | 5,283.2 |
| 31. 對外經濟協力 | - | - | - | - | - | 510.1 | - | 28.0 | 538.1 |
| 32. 食品振興 | - | - | - | 14.3 | - | - | - | - | 14.3 |
| 合計 | 212.4 | 6,804.4 | 1,664.3 | 1,958.6 | 70.2 | 2,388.1 | 3,180 | 1,564 | 17,842 |

資料：經濟企劃院,「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p. 95~103.

〈附表 10〉

民間管理基金 餘裕資金 運用現況(1988)

(단위 : 億원)

| 基金名 | 銀行 | | 第2金融圈 預託 | | 有價證券 | | 財特 預託 | 其他 | 合計 |
|-----------------|-------|----------|-------------|---------|---------|---------|----------|---------|----------|
| | 要求拂 | 貯蓄性 | 短資 | 投信 | 株式 | 債券 | | | |
| 1. 새마을國民 | 0.1 | 232.5 | 196 | - | - | 7.9 | - | - | 436.5 |
| 2. 信用保證 | 0.8 | 1,320.8 | - | - | 113.4 | 1,592.9 | - | - | 3,027.9 |
| 3. 農林水產業者信用保證 | 0.5 | 279.3 | - | - | - | 648 | - | - | 928 |
| 4. 私立學校教員年金 | 45 | 56 | - | 3,159 | 675.8 | 2,480 | - | - | 6,415.8 |
| 5. 國民體育振興 | - | - | 100.8 | 231.4 | - | - | - | - | 1,327.7 |
| 6. 畜産振興 | - | - | - | - | - | - | - | - | - |
| 7. 蠶業振興 | 51.9 | - | - | - | - | - | - | - | 51.9 |
| 8. 農地 | - | 674.3 | - | - | - | - | - | - | 674.3 |
| 9. 農藥管理 | 0.5 | 19.3 | - | - | - | - | - | - | 19.8 |
| 10. 中小企業構造調整 | - | - | - | - | - | - | - | - | - |
| 11. 輸出保證 | - | - | - | - | - | - | - | 487.9 | 487.9 |
| 12. 中小企業共濟事業 | - | 98.3 | - | - | - | - | - | - | 98.3 |
| 13. 海外鑛物資源開發 | 0.1 | 80.6 | - | - | - | - | - | - | 80.7 |
| 14. 에너지資源開發 | - | 86.2 | - | - | - | - | - | - | 86.2 |
| 15. 石油事業 | - | 8,976 | 68 | - | - | - | 7,400 | - | 16,444 |
| 16. 環境汚染防止 | 16.1 | - | - | - | - | - | - | 102.6 | 118.7 |
| 17. 가스安全管理 | 97.6 | - | 9.7 | - | - | - | - | - | 107.3 |
| 18. 公務員年金 | - | 2,566 | 744 | 1,545 | 610 | 4,035 | 9,304 | 80 | 18,884 |
| 19. 道路安全協會 | 0.6 | - | - | - | - | - | - | 95 | 95.6 |
| 20. 文藝振興 | 67 | - | - | - | - | - | - | - | 67 |
| 21. 技術信用保證 | - | 84.3 | - | - | - | 85.8 | - | - | 170.1 |
| 22. 石炭産業安全 | 13.5 | - | - | - | - | - | - | 191.8 | 205.3 |
| 23. 法律救助 | - | - | - | - | - | - | - | - | - |
| 24. 住宅金融信用保證 | 4.2 | - | - | - | 182.7 | - | - | - | 186.9 |
| 25. 科學財團(財團一般) | - | - | 109.8 | - | - | - | - | - | 109.8 |
| 26. 科學財團(研究院福祉) | 0.2 | 13.4 | - | 1.5 | - | - | - | - | 15.1 |
| 27. 韓國獎學 | - | - | - | - | - | - | - | - | - |
| 28. 私學振興 | - | - | - | - | - | - | - | - | - |
| 29. 海外鑛物資源開發 | - | - | - | - | - | - | - | - | - |
| 合計 | 246.7 | 14,539.1 | 1,228.3 | 4,936.9 | 1,399.2 | 9,032.3 | 16,704 | 1,952.8 | 50,039.3 |

資料 : 經濟企劃院, 『基金現況 吳 關聯資料』, 1990. 2, pp. 104~111.

〈附表 11〉

政府管理基金 政府出捐現況

(단위 : 百萬元)

| 區 分 | 1988 | 1989 | 1990 | 90年末累計 |
|-----------|---------|-----------|---------|-----------|
| 外國換平衡 | 85,000 | 21,100 | — | 126,100 |
| 農漁家호돈마련貯蓄 | 6,988 | 14,463 | 23,777 | 65,828 |
| 糧穀管理 | 538,400 | 951,200 | 430,000 | 3,648,483 |
| 農水産物價格安定 | — | 30,000 | — | 107,500 |
| 種子 | 379 | — | — | 12,584 |
| 農漁民後繼者育成 | — | — | — | 50,000 |
| 工業發展 | 10,000 | 10,000 | — | 58,592 |
| 中小企業創業支援 | 15,000 | 25,000 | — | 75,000 |
| 石炭産業育成 | 2,214 | — | — | 208,282 |
| 國民住宅 | 60,000 | 70,000 | — | 413,000 |
| 塵肺 | — | 2,000 | 14,800 | 21,255 |
| 報勳 | 10,623 | 2,654 | 3,169 | 99,840 |
| 農漁村地域開發 | 125,000 | 125,000 | 185,228 | 560,228 |
| 對外經濟協力 | 30,000 | 40,000 | 10,000 | 110,000 |
| 農業機械化促進 | 5,000 | — | — | 98,000 |
| 防衛産業育成 | 5,000 | 5,000 | 5,000 | 45,000 |
| 調達 | — | — | — | 101,700 |
| 山林開發 | — | — | — | 8,400 |
| 軍人年金 | — | — | — | 2,329 |
| 水産振興 | — | — | — | 500 |
| 觀光振興開發 | — | — | — | 40,150 |
| 合 計 | 893,604 | 1,296,417 | 671,974 | 5,852,771 |

資料：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 84.

〈附表 12〉

民間管理基金 政府出捐現況

(단위 : 百萬元)

| 區 分 | 1988 | 1989 | 1990 | 90年末累計 |
|-----------|---------|---------|---------|---------|
| 새마을國民 | 1,000 | - | - | 11,800 |
| 住宅金融信用保證 | 10,000 | 10,000 | 2,000 | 22,000 |
| 農林水産業信用保證 | 5,000 | 5,000 | 5,000 | 21,100 |
| 信用保證 | 20,000 | 17,000 | 8,000 | 125,700 |
| 技術信用保證 | 5,000 | 27,000 | 8,000 | 45,000 |
| 法律救助 | 500 | - | - | 500 |
| 中小企業構造調整 | 3,000 | 3,000 | 5,000 | 205,163 |
| 中小企業共濟事業 | 10,000 | 15,000 | 5,000 | 68,000 |
| 輸出保險 | 2,000 | 17,000 | 7,000 | 48,590 |
| 環境汚染防止 | 25,000 | 1,617 | 3,500 | 68,117 |
| 蠶業振興 | 2,000 | 2,000 | 1,500 | 5,500 |
| 國民體育 | - | - | - | 8,321 |
| 畜産振興 | 40,000 | - | - | 41,000 |
| 農地 | - | - | - | 17,830 |
| 海外資源開發 | - | - | - | 5,900 |
| 에너지利用合理化 | - | - | - | 7,755 |
| 科學財團 | - | 10,000 | 20,000 | 44,652 |
| 石炭産業安定 | - | 50,662 | 20,304 | 70,966 |
| 私學振興 | - | 15,000 | 20,000 | 35,000 |
| 韓國獎學 | - | 40,300 | 3,000 | 43,300 |
| 文藝振興 | - | 20,000 | - | 20,000 |
| 合 計 | 123,500 | 233,579 | 108,304 | 916,194 |

資料：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 85.

<附表 13>

基金別 財源造成方法(政府管理基金)

| 基金名 | 造成方法 | |
|-------------|------|--|
| | 政府出捐 | 其他 主要財源 |
| 報勳 | o | 정지연금, 군인보험료, 성금, 복지공단전입금, 운용수익, 기타수입 |
| 殉國烈士·愛國志士事業 | x | 대일청구권자금 전입, 운용수익 |
| 國民投資 | x | 채권발행, 예탁금, 운용수익 |
| 財形貯蓄獎勵 | x | 저축자출연, 한은출연, 한은차입금, 운용수익 |
| 農漁家목돈마련貯蓄 | o | 저축기관 임의출연, 운용수익 |
| 外國換平衡 | o | 한일청산계정부채잔액승계, 채권발행, 외화예치금, 이자(△환차손) |
| 對外經濟協力 | o | 채권발행, 재특차입, 운용수익 |
| 軍人年金 | o | 특별회계결산잉여금, 국고대여학자금전입금, 운용수익 |
| 防衛産業育成 | o | 이자수입 |
| 科學教育 | x | 민간기부금, 이자수입 |
| 糧穀管理 | o | 한은차입, 차관양곡(△당기순손실) |
| 農水産物價格安定 | o | 재특차입, 운용수익 |
| 種子 | o | 운용수익 |
| 農漁村發展 | o | 기타출연금, 발행채권, 장기차입, 운용수익 |
| 農地管理 | o | 타기금(흡수폐지)전입금, 채권발행, 재특차입금, 운용수익 |
| 中小企業創業支援 | o | 이자수입, 배당수익 |
| 石炭産業育成 | o | 재특차입, 운용수익 |
| 國民住宅 | o | 청약저축, 주택가격, 기금채권, 차관자금, 재특용자, 부권자금, 은행차입, 예탁금, 당기순이익 |
| 國民年金 | x | 각출료, 이자수입, 국민복지연금전입 |
| 社會福祉事業 | x | 국민성금, 이자수입 |
| 食品振興 | x | 과점금, 이자수입 |
| 職業訓練促進 | x | 직업훈련분담금, 가산금, 연체금, 운용수익, 기타잡수입 |
| 産業災害補償保險 | x | 기금적립금, 산특결산잉여금, 기금운용수입 |
| 放射線廢棄物管理 | x | 한전부담금, 전입금 |
| 靑少年育成 | x |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 운용수익 |
| 塵肺 | o | 사업주부담금, 석탄광업조성사업비, 전입연체금, 운용수익 |
| 觀光振興開發 | o | 운용수익 |
| 遞信保險 | x | 순보험료수입, 기금운용수익, 임대수익, 체신보험특별회계전입금 |
| 調達 | o | 특별회계전입, 결산잉여금 |
| 山林開發 | o | 이자수입 |
| 農業産學協同 | x | 민산출연(한국냉장, 남해화학), 이자수입 |

資料：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p. 86~90.

〈附表 14〉

基金別 財源造成方法(政府管理基金)

| 基金名 | 造成方法 | |
|------------|------|--|
| | 政府出捐 | 其他 主要財源 |
| 公務員年金 | x | 연금전입금, 운용수익 |
| 韓國科學財團 | o | 민간출연금, 이자수익 |
| 새마을國民 | o | 지방비, 성금, 운용수익 |
| 道路交通安全協會 | x | 부담금 |
| 信用保證 | o | 금융기관출연(△운용손실) |
| 技術信用保證 | o | 금융기관출연, 운용수익 |
| 農林水產業者信用保證 | o | 금융기관출연, 농림수산업단체출연, 운용수익 |
| 住宅金融信用保證 | o | 국민주택기금출연, 주택은행출연, 기타출연 |
| 法律救助 | o | 이월자금 |
| 私立學校教員年金 | x | 부담금, 운용수익 |
| 國民體育振興 | o | 모금수입, 광고수입, 이자수입 |
| 畜産振興 | o | 축산물판매부가금, 마사회납입금, 수입축산물 판매수익납입금, 수입가축 및 사료원료가격 차액납입금, 운용수익 |
| 蠶業振興 | o | 생사수출업자출연금, 운용수익 |
| 農藥管理 | x | 농약제조회사 출연금 |
| 中小企業構造調整 | o | 민간출연, 사업수익, 차관, 재특차입 |
| 中小企業共濟事業 | o | 민간출연, 조합원납입금, 운용수익 |
| 私學振興 | o | 운용수익 |
| 韓國獎學 | o | 민간출연, 운용수익 |
| 輸出保險 | o | 운용수익 |
| 石油事業 | x | 징수금, 운용수익 |
| 海外資源開發 | o | 운용수익 |
| 에너지利用合理化 | o | 운용수익 |
| 石炭産業安全 | o | 가격부과금, 운용수익 |
| 海外建設振興 | x | 해외건설업체출연금, 이자수입 |
| 交通安全振興 | x | 분담금, 기금운용수익 |
| 文化藝術振興 | x | 모금수입, 방송공사출연 |
| 環境汚染防止 | o | 정부출연, 배출부과금 |
| 가스安全管理 | x | 징수금, 운용수익 |

資料：經濟企劃院, 『基金現況 및 關聯資料』, 1990. 2, pp. 91~94.

• 研究報告書案内 •

◀ 研究叢書 ▶

| | | |
|------------|--|------|
| 第1-81-01卷 | 現行稅制的 綜合評價와 1982年度 稅法改正方向研究 | 1981 |
| 第2-81-02卷 | 韓國經濟 短期豫測模型 | 1981 |
| 第3-81-01卷 | 우리나라 企業의 人件費支拂能力評價와 賃金對策 | 1982 |
| 第4-82-02卷 | 韓國企業의 成長 및 財務行態 | 1982 |
| 第5-82-03卷 | 租稅負擔의 測定과 適正負擔率에 관한 研究 | 1982 |
| 第6-82-04卷 | 韓國의 私金融市場에 관한 研究 | 1982 |
| 第7-82-05卷 | 稅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관한 研究 | 1982 |
| 第8-82-06卷 | 所得稅體系 合理化를 위한 基礎研究 | 1982 |
| 第9-82-07卷 | 財政技能의 再調整과 行政技能 官僚制度의 改編方案 研究 | 1982 |
| 第10-82-08卷 | 韓國租稅文化의 反省과 稅制의 綜合改善方向 | 1982 |
| 第11-83-01卷 | 稅收推計模型의 精密化와 中長期 稅收展望 | 1983 |
| 第12-83-02卷 | 韓國企業의 準租稅負擔에 관한 理論的 考察과 負擔 水準의 實證的 分析 | 1983 |
| 第13-83-03卷 | 段階的 貿易自由化에 對應한 關稅率과 關稅行政의 改編方向 | 1983 |
| 第14-83-04卷 | 80年代 產業構造 高度化를 위한 輸入自由化와 關稅 政策의 方向 | 1983 |
| 第15-83-05卷 | 法人所得과 配當所得의 二重課稅調整에 관한 研究 | 1983 |
| 第16-84-01卷 | 韓國의 貿易發展과 綜合貿易商社의 役割 | 1984 |
| 第17-84-02卷 | 韓國의 赤字財政 研究 | 1984 |
| 第18-84-03卷 | 韓國의 土地稅制 改編方向 研究 | 1984 |
| 第19-84-04卷 | 大灣의 產業政策 | 1984 |
| 第20-85-01卷 | 韓國의 地方財政 研究 | 1985 |
| 第21-85-02卷 | 纖維產業의 構造調整에 관한 實證研究 | 1985 |

| | | |
|------------|----------------------------------|------|
| 第22-85-03卷 | 稅法上 實質課稅에 관한 研究 | 1985 |
| 第23-85-04卷 | 金融費用增加와 物價上昇에 관한 微視的 分析 | 1985 |
| 第24-85-05卷 | 經濟體質強化를 위한 租稅政策方向 | 1985 |
| 第25-85-06卷 | 韓國貿易構造의 決定要因과 變化推移에 관한 研究 | 1985 |
| 第26-85-07卷 | 韓國企業의 經營特性要因에 관한 研究(I) | 1985 |
| 第27-85-08卷 | 半導體產業의 現況과 育成政策 | 1985 |
| 第28-86-01卷 | 信用配分과 金融自律化의 方向 | 1986 |
| 第29-86-02卷 | 우리나라 通貨의 役割과 產業別 資金配分의 效率性 分析 | 1986 |
| 第30-86-03卷 | 市場經濟體制의 高度化와 公正去來秩序 | 1986 |
| 第31-86-04卷 | 產業別 技術革新過程과 政策課題 | 1986 |
| 第32-86-05卷 | 製造業部門 比較優位構造의 變化推移에 관한 研究 | 1986 |
| 第33-86-06卷 | 非上場株式 課稅評價方法의 合理化方案 | 1986 |
| 第34-86-07卷 | 韓國과 臺灣의 通貨政策 및 物價 | 1986 |
| 第35-86-08卷 | 企業의 準租稅負擔에 관한 實證的 研究 | 1986 |
| 第36-86-09卷 | 韓國經濟學 研究序說 | 1986 |
| 第37-86-10卷 | 韓國의 中小企業과 系列化 | 1986 |
| 第38-87-01卷 | 海外轉換社債發行과 企業財務戰略 | 1987 |
| 第39-87-02卷 | 政府와 市場 | 1987 |
| 第40-87-03卷 | 開放經濟下의 資金政策 | 1987 |
| 第41-87-04卷 | 換率變動에 따른 韓·日의 產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 | 1987 |
| 第42-87-05卷 | 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研究 | 1987 |
| 第43-87-06卷 | 企業集團의 形成메카니즘과 評價 | 1987 |
| 第44-87-07卷 | 韓國 企業그룹의 多角化戰略 研究 | 1987 |
| 第45-87-08卷 | 換率變動에 따른 國際競爭力과 產業內貿易의 變化推 移 | 1987 |
| 第46-87-09卷 | 中小企業의 知識集約化에 관한 研究 | 1987 |
| 第47-87-10卷 |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의 改編方案 研究 | 1987 |

| | | |
|------------|--|------|
| 第48-88-01卷 | 技術革新의 産業組織의 特性에 관한 研究 | 1988 |
| 第49-88-02卷 | 企業의 技術擴散에 관한 研究 | 1988 |
| 第50-88-03卷 | 公企業 및 政府出資企業의 民營化 推進方向에 관한 研究 | 1988 |
| 第51-88-04卷 | 産業內貿易의 變化推移와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 1988 |
| 第52-88-05卷 | 臺灣의 租稅構造와 貯蓄·投資 | 1988 |
| 第53-88-06卷 | 韓國貿易收支와 主要産業 輸出構造 分析 | 1988 |
| 第54-88-07卷 | 美國貿易의 政治經濟學과 韓國의 對應方案 | 1988 |
| 第55-88-08卷 | 經濟發展에 있어서 國家財政의 役割 | 1988 |
| 第56-88-09卷 | 韓國資本主義의 이데올로기 再定立方向 | 1988 |
| 第57-88-10卷 | 韓國企業의 準租稅에 관한 研究 | 1988 |
| 第58-88-11卷 | 資本自由化의 巨觀經濟的 側面 | 1988 |
| 第59-88-12卷 | 産業集中度의 決定要因 및 變化要因과 最適企業規模에 관한 研究(Ⅰ) | 1988 |
| 第60-89-01卷 | 開放經濟下의 金利政策 | 1989 |
| 第61-89-02卷 | 韓國 大企業集團의 生成環境과 進路 | 1989 |
| 第62-89-03卷 | 産業集中度의 決定要因 및 變化要因과 最適企業規模에 관한 研究(Ⅱ) | 1989 |
| 第63-89-04卷 | 經濟民主化와 金融通貨政策 | 1989 |
| 第64-89-05卷 | 南北韓 産業 및 技術協力の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 1989 |
| 第65-89-06卷 | 蘇聯·東歐諸國의 政治 및 經濟政策의 變化와 産業 및 技術協力에 관한 研究 | 1989 |
| 第66-89-07卷 | 3高現象이 企業採算性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研究 | 1989 |
| 第67-89-08卷 | 適正換率分析에 관한 理論定立 | 1989 |
| 第69-89-09卷 | 民間主導型 尖端技術革新을 위한 政策 및 企業戰略에 관한 研究 | 1989 |
| 第69-89-10卷 | 우리나라 所得不平等의 現況과 要因分析 | 1989 |
| 第70-90-01卷 | 日本의 新産業戰略과 技術革新 | 1990 |

| | | |
|------------|------------------------------|------|
| 第71-90-02卷 | 勞動費用과 國際競爭力 | 1990 |
| 第72-90-03卷 | 韓國經濟 分期計劃模型 | 1990 |
| 第73-90-04卷 | 韓國의 工業化와 勞動力(I) | 1990 |
| 第74-90-05卷 | 主要產業別 向後 投資需要 推定 및 最適 資金調達戰略 | 1990 |
| 第75-90-06卷 | 開放經濟下의 企業稅制 改編方向 | 1990 |
| 第76-90-07卷 | 韓國의 租稅行政에 관한 研究 | 1990 |
| 第77-90-08卷 |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의 改編 試案 | 1990 |
| 第78-91-01卷 | 우리나라 政府基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991 |

◀ 研究調查資料 ▶

| | | |
|------------|--------------------------------|------|
| 第1-81-01卷 | 아시아·太平洋地域의 貿易 및 產業調整 | 1981 |
| 第2-81-02卷 | 現行 租稅의 問題點 | 1981 |
| 第3-82-01卷 | 民主資本主義의 將來 | 1982 |
| 第4-82-02卷 | 地方歲入의 地域的 不均衡에 관한 經驗的 研究 | 1982 |
| 第5-83-01卷 | 政府規制 緩和方向과 美國經濟 展望 | 1983 |
| 第6-83-02卷 | 韓國經濟學의 摸索 | 1983 |
| 第7-83-03卷 |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 1983 |
| 第8-83-04卷 |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 | 1983 |
| 第9-83-05卷 |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 | 1983 |
| 第10-83-06卷 | 韓國과 第4次 產業革命 : 1960~2000 | 1983 |
| 第11-83-07卷 | 企業稅制 合理化的 基礎研究 | 1983 |
| 第12-83-08卷 | 民主資本主義와 韓國의 發展 | 1983 |
| 第13-83-09卷 | 國民租稅意識의 調查研究 | 1983 |
| 第14-84-01卷 | 成長經濟에 있어서의 資本所得에 관한 適正稅率과 歸着分析 | 1984 |
| 第15-84-02卷 | 資本主義精神과 反資本主義心理 | 1984 |

| | | |
|------------|--|------|
| 第16-84-03卷 | 美·日的產業政策과 韓國의 對應 | 1984 |
| 第17-84-04卷 | 企業의 社會奉仕 | 1984 |
| 第18-85-01卷 | 中共의 經濟法令 解說 | 1985 |
| 第19-85-02卷 | 우리나라 通貨의 役割과 通貨信用政策의 方向 | 1985 |
| 第20-85-03卷 | 家計貯蓄增大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 1985 |
| 第21-88-01卷 | 轉換期の 勞使問題와 對應方向(Ⅰ) | 1988 |
| 第22-88-02卷 | 轉換期の 勞使問題와 對應方向(Ⅱ) | 1988 |
| 第23-88-03卷 | 換率變動의 輸出入價格에의 轉嫁度와 示唆點 | 1988 |
| 第24-88-04卷 | 金融自律化의 效率的 推進方向 | 1988 |
| 第25-88-05卷 | 원貨切上에 따른 輸出企業 對應戰略 | 1988 |
| 第26-88-06卷 | 中國의 經濟改革과 韓國企業의 進出 | 1988 |
| 第27-88-07卷 | 國際收支 黑字管理와 巨視經濟政策 | 1988 |
| 第28-89-01卷 | 원高·賃金上昇의 物價 및 企業利潤에 미치는 影響 分析 | 1989 |
| 第29-89-02卷 | 韓國의 物價要因과 金利 및 通貨政策方向 | 1989 |
| 第30-89-03卷 | 韓國企業의 資本構造와 資本費用 | 1989 |
| 第31-89-04卷 | 賃金構造와 產業構造 再編方向 | 1989 |
| 第32-89-05卷 | 換率政策의 課題와 展望 | 1989 |
| 第33-89-06卷 | 研究開發活動에 있어서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役割과 課題 | 1989 |
| 第34-89-07卷 | 勞總·經總 賃金指針의 比較分析 | 1989 |
| 第35-90-01卷 | 우리나라 企業의 成長推移 및 規模變動要因分析 | 1990 |
| 第36-90-02卷 | 南美의 經驗과 韓國經濟 | 1990 |
| 第37-90-03卷 | 金利自由化의 成果와 課題 | 1990 |
| 第38-90-04卷 | 金融實名去來制 導入實施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 및 企業體 設問調查結果 分析 | 1990 |
| 第39-90-05卷 | 混合企業의 經濟的 效果 | 1990 |
| 第40-90-06卷 |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產業改編方案 | 1990 |

| | | |
|------------|---------------------|------|
| 第41-90-07卷 | 人的資源의 企業에 對한 貢獻度 測定 | 1990 |
| 第42-90-08卷 | 勞動時間 短縮과 勞使葛藤構造 | 1990 |
| 第43-90-09卷 | 勞動費用 上昇과 國際競爭力 | 1990 |
| 第44-90-10卷 | 勞總·經總 賃金指針의 改善方向 | 1990 |
| 第45-90-11卷 | 世界經濟의 展望과 韓國經濟 | 1990 |
| 第46-91-01卷 | 經濟民主化와 政府規制 | 1991 |
| 第47-91-02卷 | 不動產 保有課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991 |
| 第48-91-03卷 | 不動產 投機와 不動產價格 | 1991 |

◀ 研究報告 ▶

| | | |
|-----------|-----------------------------|------|
| 第1-85-01卷 | 金融革新과 通貨金融政策 改編方向 | 1985 |
| 第2-85-02卷 | 金融自律化 및 銀行與信管理 改善方案 | 1985 |
| 第3-85-01卷 | 現行經濟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 1986 |
| 第4-87-01卷 | 우리나라에 있어서 金利가 貯蓄·投資에 미치는 影響 | 1987 |
| 第5-87-02卷 | 日本の 貿易·資本自由化와 그 對應政策 | 1987 |

◀ 政策研究 ▶

| | | |
|----------|--------------------|------|
| 第1-86-1卷 | 財政規模의 持續的 膨脹과 是正方案 | 1986 |
| 第2-86-2卷 | 經濟力集中에 대한 視角과 認識 | 1986 |
| 第3-86-3卷 | 1987年 通貨政策 運用方向 | 1986 |
| 第4-87-1卷 | 經濟民主化와 市場經濟體制의 定立 | 1987 |
| 第5-87-2卷 | 賃金調整과 對應政策課題 | 1987 |
| 第6-88-1卷 | 經濟民主化의 基本構想 | 1988 |
| 第7-88-1卷 | 3高時代의 對應戰略 | 1989 |